

연구총서 12-AB-09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Chines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y

김한균 · 김창준 · 정군남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창준

중국연변대학 법학원 교수

■ 정군남

중국길림대학 법학원 교수

발간사

본 연구보고서는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형사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히 동북3성지역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중국내 다수의 연구기관들과 상호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국의 형사법제도와 형사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따른 정책연구 수요에 부응하여 수시과제로 기획되었으며, 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책연구자와 실무자들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과제에 참여하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 주신 중국 연변대 김창준 교수 연구팀, 중국 길림대 정군남 교수와 김한균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CONTENTS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배경 - 韓·中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내용구성	18
1. 연구의 대상현안	18
2. 연구의 구성	20
제2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현황과 처벌실태	23
제1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의의와 범위	25
1. 중국 형법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출입국관련 범죄규정	25
2. 밀출입경죄 관련 법해석 지침	27
제2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현황과 특징	28
1. 중국대륙 국민의 밀출국 관련행위의 실태	28
2. 외국인의 중국 밀입국 관련행위의 실태	30
3. 중국 밀출입국 범죄의 특징	33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제재	37
1. 밀출입경을 조직한 죄	37
2. 출입경증명서를 편취한 죄	38
3. 위조·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경 증명서를 제공한 죄	38
4. 출입경증명서를 판매한 죄	39
5. 밀출입경자를 운송한 죄	39

6. 밀출입경죄	40
7. 밀출입경자의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한 죄	40
8. 밀출입경자의 통행을 허가한 죄	41
제4절 개정법상 “3불” 외국인 및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41
1.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3불” 외국인	41
2. “3불” 외국인의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49
제5절 소결	53

제3장 2012년 6월 중국출입경관리법의 수정배경 및 그 내용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의 수정 및 그 내용	61
1. 통일입법	62
2. 관리와 서비스의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하는 원칙구현	62
3. 행정주체 직책구분	63
4.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관리 및 처벌 강화	63
5. 몇 가지 새로운 제도확립	64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 입법배경고찰	65
1. 사회발전의 추진	65
2. 현행 출입경관리법률제도의 급박한 개선필요	69
3.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규제 및 그 처벌강화	72
4. 엄격한 비자발급제도 및 입경절차	73
5. 외국인 정류거류관리 강화	75
6. 외국인 재 중국 취업관리 규범	75
7. “3불” 인원예 대한 조사, 심사의 조치와 법률책임	76
제3절 《형법》의 출입경관리 방해죄 관련죄명의 적용상황	78
1. 입법연혁과 취지	78
2. 국(변)경관리 방해죄 관련 규정 및 적용	80
3. 소 결	89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경관리법》 입법전망	89
1. 법률의 실무상 입법의 세분화와 운영적 해석필요	91

2. 출입경관리의 구제강화 필요	91
3. 출입경관리기구와 체제에 대한 입법적 개혁	92
4. 출입경관리법의 점진적인 이민관리법으로의 전환	93
제4장 결론	95
제1절 주요논점의 정리	97
1. 북한주민의 밀출입국 문제	98
2. 출입국관리 위반범죄의 증가추세	98
3.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	9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9
1. 불법출입국 외국인관련 조치의 규범화 및 처벌강화	99
2. 불법체류 외국인관련 조치의 규범화 및 처벌강화	100
3. 불법출입국방조행위의 형법상의 처벌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5
부록: 2012년 개정 중국 출입경관리법	107

1.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한 한국인들에게는 대체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구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 3성, 북한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제재는 정책적 관심대상이다.
2. 2012년 6월 중국 출입경관리법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중 한국인들의 보호, 탈북자지원활동에 따른 한중간의 외교적 문제, 중국내 구금된 한국인의 보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상황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3.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및 이에 대한 형사제재는 공민출경입경관리법, 외국인출경입경관리법과 같은 행정법규와 별도로 형법전 제6장의 제3절 및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밀출입경 관련범죄란 국가의 국(변)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출입경하거나 불법출입경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국(변)경관리질서를 파괴하고 그 정상이 엄중하여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말한다.
4. 중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 영향도 날로 심각해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제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밀출입국범죄는 개인차원의 밀출입국행위로부터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밀출입국범죄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적발,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5. 외국인의 “3불” 문제는 정상적인 출입경관리질서를 방해하고 노동력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계획생육, 환경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과 치안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입경 또는 불법체류한 후 절도, 강도, 마약매매, 살인, 부녀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매매, 집단사기 등 범죄사건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이른바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 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며, 외국인의 체류·거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중국에 있어서의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7.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중국형법 제318조) 는 타인을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리고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집단의 주요 인물,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수 차례 조직하거나 다수의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하는 경우, 위법소득액수가 거액인 경우,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8. 타인의 밀입국(변)경 운송죄 (중국형법 제321조) 규정은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운송한 죄이며, 형법 제318조 규정의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죄와는 관련이 있다. 실무에서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하는 조직하는

것과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운송하는 정황이 가장 빈번하다.

9. 중국의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관련제도 개혁은 유의할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가지가 있다. 즉 불법출입국 외국인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와 출입국관리 제도의 국제기준에 상응한 개선노력이 그것이다. 불법출입국과 체류외국인 규제강화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과 사회질서유지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만큼 중국내 체류 국민의 활동과 중국내 한국국민의 보호를 책임진 관계당국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하여 중국이 출입경 권의 보장상 국제기준에 상응하여 본국으로의 귀국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추방시 받아들여질 권리 등을 모색함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펼치던 우리 국민들의 구금사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¹⁾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한 한국인들에게는 대체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구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 3성, 북한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제재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에서 중국출입경관리법을 개정하였는 바, 이는 1985년 제정된 “중국국민출입경관리법”과 “외국인출입경관리법”에 대체하여 제정된 것으로, 2012년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재중 한국인들의 보호, 탈북자지원활동에 따른 한중간의 외교적 문제, 중국내 구금된 한국인의 보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1) 연합뉴스 2012년 5월 14일자 참조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적 적절성이 있다.

본 연구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출입국관리와 재외국민보호 업무와의 정책연관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관련 형사처벌제도를 비교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중국내 대한민국국민의 보호강화방안 및 형사사법공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 연구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배경 - 韓·中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필요성

가. 한·중 수교 20주년과 중국 동북3성지역의 발전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 국은 활발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양국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무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양국 경제의 발전, 특히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과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경제구조가 협력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10년 후에는 현재 3000억 달러 규모인 양국간 무역총액이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년과 같이 정치경제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문화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지속된다면 양국의 관계는 교역규모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연안지역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동북지역이 최근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개방과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 그리고 일본과 한국 기업의 투자 덕분이다. 물류 문제가 해소돼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낼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전에도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 동북3성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발달된 공업지대였다. 중국 전체 석유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헤이룽장의 다정유전을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기계·석유화학 시설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이 선전 등 남방으

로 옮겨가면서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은 뒤처졌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랴오닝연해경제개발벨트’ 개발계획은 다롄을 중심으로 단둥, 후루다우 등 6개 해안도시의 항만과 주변 인프라를 개선, 텐진과 산둥반도를 잇는 초광역 경제권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내 개발효과가 성공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린성에서는 2009년부터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사업의 하나인 지린-훈춘간 철도 공사가 2014년 완공되면 창춘을 비롯한 동북 일대는 물론 베이징과 네이멍구 등에서 오는 물자도 훈춘을 거쳐 북한과 러시아로 갈 수 있게 된다. 훈춘에는 ‘두만강국제협력시범구’를 조성해 해외 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이점에 풍부한 지하자원이 결합하면서 동북지역은 향후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²⁾

나. 한중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협력의 창신

한중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가운데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협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일련의 중국관련 형사법연구³⁾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주관하는 한·중 형법 국제학술심포지움⁴⁾이다. 이처럼 한중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자들간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연구 성과물도 질적 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단계 높은 수준의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을 전망할 시기가 되었다.

2) 산업은행, 중국 동북진흥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동북아경제이슈, 2006, 109-111면, 신호윤, 동북3성진흥전략과 한·동북3성 경제협력방안, 산업은행조사연구, 2008년 2월.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중국관련 연구로서,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 한국과 중국 (2005), 중국의 금융사기범죄의 국제비교 연구(2006), 중국의 독직범죄에 관한 연구(2006), 중국의 탐오죄에 관한 연구(2007)를 수행했으며, 2012년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중이다. 또한 2009년 7월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북경에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법교육”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4) 2004년 1월 북경에서 제1회 회의가 “한·중 형법 및 형사정책의 연혁 및 기본사상”을 주제로, 2004년 8월 제 2회 회의는 서울에서 “한·중 형사제재 비교”를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제3회는 2005년 중경에서 “한·중 형법의 새로운 진전”을 주제로, 2006년 제4회는 전주에서 “경제와 형법”을 주제로, 2007년 제5회는 북경에서 “사형제도”를 주제로, 2008년 제6회는 대구에서 “소년범죄와 소년사법”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9년 제7회는 Kunming에서 “한·중 형법의 개정과 발전”을 주제로, 2010년 제8회는 춘천에서 “현대적 범죄와 형법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012년 제10회 대회는 서울에서 “한중 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은 중앙공산당회의에서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에 대하여 사회과학 발전의 ‘창신공정’을 비준한 바 있다.⁵⁾ 마찬가지로 한중 형법 및 형사정책 학술교류와 연구협력에서도 “創新”이 요청된다. 즉 한중 비교형법 연구와 형사정책분야의 협력연구에 있어서 학술체계와 방법 및 연구방식을 새롭게 하고 한단계 높아진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 특히 동북3성지역을 중심으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들이 양국의 형사사법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동북3성의 발전에 따른 한중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형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정책연구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협력연구가 필요한 현안문제들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동북3성지역의 개발과 함께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되면서 상호 형사법제와 형사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며, 신흥개발지역이나 국경지역등에서의 범죄방지와 형사사법공조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중 형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학술교류와 협력연구의 창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즉 양국간의 학술 및 정책실무 교류와 협력을 체계화 상시화하고, 중·한 법률정보DB의 구축과 조선한국법연구분야의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협력 사안으로는 한중 형사사법DB구축, 조선한국법연구에서의 협력연구, 창춘·지린·투먼지역, 도문강지역개발 및 국경지역 범죄방지방안연구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구성

1. 연구의 대상현안

본 연구의 배경이 된 현안은 중국내 체류하면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속강화에 따른 외교적 문제소지와 재외국민보호의 문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신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2.

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연변 지역 등에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련 규정의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중국내 탈북자 지원활동의 문제

2012년 5월 국내언론은 정부관리들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말을 인용하여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다 동료 3명과 함께 중국의 국가안전청에 체포돼 갇혀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⁶⁾

지난 3월 국내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펼쳤던 김영환(북3월 23일 한국을 출국 한 후, 3월 29일 중국 대련에서 ‘국가안전위해죄’로 요령성 국가안전청에 의해 체포되어 50여 일 동안 강제구금 되어 있다가 추방되었다. 심양총영사관은 김영환과 한국인 3인을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구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4월 26일에 한 차례 영사접견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한국인 3인은 요령성 국가안전청이 접견 자체를 불허해 영사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요령성 국가안전청은 김영환 씨와 한국인 3인에 대한 구금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영환 씨는 요령성 국가안전청 단동 수사국에 수감되었으며, 그 외 한국인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도 대련 등에서 체포되어 요령성 국가안전청에 의해 격리된 채 비밀리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령성 국가안전청은 한국인 3인에 대한 구금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지금 어느 지역, 어떤 장소에 구금되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⁷⁾

6) 김영환씨는 당시 대련에서 탈북 주민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아는 한 인사는 “김씨 등이 북한에서 탈북이나 민주화를 원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까지 벌이려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쪽은 김씨 등에게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체포된 데는 탈북·민주화 지원 활동에 극도의 반감을 가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요청과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정부의 고위 관리의 “김씨 등이 잘 나쁜 범죄가 아니라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추방 형식으로 이들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년 5월 14일자)

7)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5월 14일).

나. 중국 연변지역 외국인 불법입국과 체류 단속강화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올해 외국인 불법입국과 체류 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연변주 공안국은 외국인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외국인 불법입국·체류·취업은 물론 외국 조직이나 종교단체가 연변에 들어와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공갈, 허위 자선 등 자주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시민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불법체류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중 접경 지역인 연변 일대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주요 탈북 루트로 지목돼왔다. 이 때문에 공안 당국이 탈북자를 비롯한 불법 입국자를 제3국으로 밀입국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검거 활동을 수시로 벌이는 지역이다.⁸⁾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의의와 범위, 중국국민의 밀출국 관련행위와 외국인의 중국 밀입국 관련행위의 실태, 중국 밀출입국 범죄의 특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제재를 개관한다. 또한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상 이른바 “3불” 외국인 및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2012년 6월 중국출입경관리법의 개정배경 및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출입국관련 법제와 출입국관련범죄를 규정한 형사법제 개혁을 위하여 입법의 세분화와 운영적 해석, 출입경권리의 구제강화, 출입경관리기구와 체제에 대한 입법적 개혁, 출입경관리법의 점진적인 이민관리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체류외국인 규제 및 처벌강화의 정책경향과 법제개혁전망에 터잡아 중국체류 활동 한국국민의 보호강화를 위해 현행 중국국내

8) 연합뉴스 2012년 5월 23일자.

법의 추세와 정책적 지향점을 인식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1장과 제4장은 김한균이, 제2장은 연변대 김창준, 현송학, 최군용, 형소흥 교수가, 제3장은 길림대 정군남 교수가 각각 집필하였다.

제2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현황과 처벌실태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현황과 처벌실태

제1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의의와 범위

1. 중국 형법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출입국관련 범죄규정

가. 출입국 관련법과 불법출입국행위

중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85년에 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경입경관리법》(약칭 공민출경입경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경관리법》(약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구 출입국관리 관련법률은 20여년의 시행을 거쳐 2012년 6월에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약칭 출경입경관리법)으로 통합되었으며 개정법은 2013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법과 신법은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불법”(非法)출입국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법출입국행위는 불법출입경(非法出入境), 불법체류(非法居住), 불법취업(非法就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구법과 신법은 모두 범죄행위가 아닌 행정불법행위만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만 규정하고 있다. 즉 신법과 구법의 규정에 의한 불법출입국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닌 행정불법

행위에 속한다. 때문에 불법출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아닌 행정불법행위로 분류되어 있다.

나. 형법상 출입국관련 범죄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및 이에 대한 형사제재는 모두 행정법인 《공민출경입경관리법》, 《외국인출경입경관리법》 또는 통합된 《출경입경관리법》이 아닌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형법전 제6장의 제3절 및 제9장에 규정된 밀출입경 관련범죄를 가리킨다. 밀출입경 관련범죄란 국가의 국(邊)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출입경하거나 불법출입경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국(邊)경관리질서를 파괴하고 그 정상이 엄중하여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출입경”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위조·변조하거나 편취한 출입경증명서를 사용하여 출경⁹⁾, 입경¹⁰⁾한 경우; 둘째, 타인의 출입경증명서를 사용하여 출경, 입경한 경우; 셋째, 변방검사를 도피하여 출경, 입경한 경우; 넷째, 기타의 방법으로 불법출경, 불법입경한 경우(《출경입경관리법》 제71조)가 그것이다.

다. 불법출입경과 밀출입경

중국 형법은 행정법인 《출경입경관리법》과 달리 “불법출입경”이라는 용어가 아닌 “밀출입경(偷越國·邊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모두 8개 종류에 달한다. 예를 들면 318조의 타인의 밀출입경을 조직한 죄, 319조의 출입경증명서를 편취한 죄, 제320조의 위조·변조한 출경증명서를 제공한 죄, 위조·변조한 출입경증명서를 판매한 죄, 제321조의 밀출입경자를 운송한 죄, 제322조의 밀출입경죄, 제415조의 밀출입경자

9) 출경(出境)이란 중국대륙으로부터 他國 또는 타 지역으로 가거나 중국 대륙으로부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거나 또는 중국대륙으로부터 타이완지역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10) 입경(入境)이란 他國이나 타 지역으로부터 중국 대륙으로 들어오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부터 중국대륙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타이완지역으로부터 중국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의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한 죄, 밀출입경자의 통행을 허가한 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밀출입경 관련범죄중 제322조의 밀출입경죄를 제외한 기타의 범죄는 모두 타인 밀출입국방조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타인 밀출입경 방조범죄”란 타인의 밀출입국을 조직하거나 타인을 조직하여 밀출입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노무수출, 경제무역왕래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여권·비자 등 출국증명서를 편취하거나 또는 밀출입국자¹¹⁾를 운송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인의 밀출입국행위에 대해 계획, 조직, 지휘, 실행, 협조 등 역할을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중국의 형법은 밀출입경 관련범죄에 있어서 타인 밀출입국방조범죄를 형사처벌의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법전 제322조 규정상 밀출입경죄는 유일하게 타인 밀출입국방조죄가 아닌 밀출입국 관련범죄로서 밀출입국자 본인을 범죄주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출입경행위의 정상이 엄중한 자를 그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밀출입경죄 관련 법해석 지침

최고인민법원이 2002년 1월에 반포·시행한 《타인의 밀출입경을 조직, 운송 등의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밀출입경행위를 한 자로서 동시에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밀출입경행위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로 인정한다.

- (1) 境外에서 국가이익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밀출입경행위를 3차 이상 한 경우
- (3) 타인을 유인하여 함께 밀출입경행위를 한 경우
- (4) 밀출입경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밀출입국행위를 한 경우
- (5) 기타 밀출입경행위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

11) 본 문은 상황에 따라서는 밀출입국에 성공한 정착민을 불법이민이라는 칭호도 사용한다.

따라서 중국법상 밀출입경행위가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정상이 엄중한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제2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의 현황과 특징

1. 중국대륙 공민의 밀출국 관련행위의 실태

2000년 이후 수차례의 밀출입국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참사들은 중국 밀출입국 범죄의 상황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들을 보면, 2000년 6월 19일에 영국의 더블항에서 발생한 58명의 중국 복건성(福建省) 출신의 밀출국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참사, 2001년 10월 8일 한국의 전라남도 여수항 해역에서 발생한 25명의 중국 복건성 출신의 밀출국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참사, 2004년 2월 5일에 근 20명의 중국 국적의 불법 勞務者들이 영국 잉글랜드 서북부에서 죽음을 당한 참사 등이 있다.

2000년 이후 대륙공민의 밀출국 관련행위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발생실태

중국은 對 국외 移民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이민은 4000만명을 초과하며 이들 중 상당히 높은 비례를 차지하는 이민은 밀출국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밀출국행위를 하는 자는 매년 8만명 내지 10만명에 달하며 밀출국에 성공하는 자(국외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는 매년 2만명에 근접한다고 한다.¹²⁾ 이로 볼 때 매년 중국에서 발생하는 불법이민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은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바 주로 북미주, 서유럽, 호주, 일본 등 지역과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다수가 불법취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들도 그 지역을 발판

12) 黃潤龍, 中國的非法移民問題, 人口與經濟, 2001年 1月 30日.

으로 서유럽이나 북미주 국가로 밀입국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 밀출국대상 지역

북미주, 서유럽, 호주, 일본 등은 중국 밀출국자들의 주요한 목적지에 속하며, 그중 미국은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이다. 역사, 지리, 문화 및 민족 등 요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근년에 와서는 중국의 불법이민의 목적지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복건성 출신의 밀출국자는 통상적으로 미국으로, 절강성 출신의 밀출국자는 유럽으로, 광둥성 출신의 밀출국자는 홍콩이나 마카오로, 내몽골과 동북지역의 밀출국자는 러시아나 한국으로, 강소성과 상해직할시 출신의 밀출국자는 일본으로, 요녕성과 산둥성 출신의 밀출국자는 한국으로, 신강위글족자치구 출신의 밀출국자는 중부아시아로 목적지를 선호한다.

다. 지리적 분포

1980년대 초기에는 밀출국활동이 주로는 중국 남방의 부분적인 연해지역에서 진행되어 왔었고 북부의 연해지역에 있어서는 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초의 밀출국행위는 개개인의 散發的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0년대 이후에는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산둥성, 료녕성 등 연해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방식으로 배를 타고 밀출국하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하였다. 밀출국의 목적지 역시 시초의 일본으로부터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한국, 서유럽 등 국가로 확대되었고 밀출국행위에 가담하는 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복건성, 광둥성 등 남방 연해지역의 출신의 밀출국자가 중국 밀출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근년에 이르러 산둥성, 요녕성, 강소성, 상해직할시, 호남성 출신의 밀출국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밀출국자의 연령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18세로부터 40세까지,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문화정도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이 위주이며, 여성밀출입국자는 30%정도에 그친다. 밀출국자 대부분이 무직업자, 농민, 실업노동자이며 부분적인 불경기에 처한 기업의 재직노동자도 있었다.¹³⁾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전국 각 세관의 변경검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출입경자는 9465명이고, 체포한 밀출입국 조직자는 1405명이며 그중 22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¹⁴⁾ 2003년 전국公安기관이 검거한 불법출입경자는 3999명이고, 체포한 밀출입국 조직자, 운송자는 774명이었다.¹⁵⁾ 2006년에 전국 각 세관의 변경검사기관이 적발검거한 밀출입경자는 5937명(次)이고¹⁶⁾ 2007년에 전국의公安·변경검사기관이 검거체포한 밀출입경자는 3009명(次)이었다.¹⁷⁾

2. 외국인의 중국 밀입국 관련행위의 실태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에 융합되는 진척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가 날로 발전하고 시민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다. 광주(廣州)시의 경우 2005년 각 세관을 통해 광주에 입경한 외국인은 300만명(차)에 달하였다. 동시에 광주시에 常住하고 있는 외국인은 5만명에 달하고 2010년에 20만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점차적으로 북미주, 서유럽, 호주, 일본으로 불법이민하는 途中移轉國으로 되고 있다.

외국인의 중국 밀입국 관련행위의 실태와 그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의 중국 밀입국 규모 증가추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적발·검거한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3불” 외국인(중국에 있어서는 이를 “三非”외국인이라고 통칭함)이 8만 5천명에 달하는 바, 그중 강제송환당한 자가 3만명에 이른다. 또한 강제송환당한

13) 王麗娜, 全球化趨勢下中國反偷越問題研究, 碩士學位論文, 武漢大學, 2005年 3月.

14) 公安部宣傳局, 反偷越聯合行動4月拉開戰幕, <http://www.mps.gov.cn/n16/n1237/n1342/116893.html>, 2002. 3. 26.

15) 全曉書, 近5個月查獲偷渡人員5000多, 人民日報, 海外版, 2004. 3. 25.

16) 中國新聞網, 中國公安機關共查獲非法出入境人員5973名(次), http://www.chinanews.com.cn/sh/news/2007.03.14_890956.shtml, 2007. 3. 14.

17) 公安部網站, 公安部: 07年查獲非法出入境人員2772名(次), http://news.xinhuanet.com.polics.2008_03_02.content_7702068.htm, 2008. 3. 2.

후 재차 밀입국한 자가 적지 않고 약 5만여명의 외국인이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에 중국의 공안기관은 모두 6,3만명의 “3불” 외국인을 강제송환하였고 2006년에는 1,6만명의 “3불” 외국인을 강제송환하였다.¹⁸⁾

광둥성의 상황을 실례로 든다면, 광둥성은 남부연해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경제가 발달하고 세관이 많은 데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외국의 밀출입국 범죄집단은 광둥성을 외국인을 조직하여 중국에 불법입경 또는 불법체류하거나 이를 발판으로 북미주, 서유럽 등 선진국가로 밀입국하는 이상적인 지역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광둥성에서는 적발·검거되는 불법입경, 불법체류¹⁹⁾, 불법취업 등 “3불” 외국인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에는 2442명, 2002년에는 4405명, 2003년에는 4687명, 2004년에는 5435명, 2005년에는 6362명 이 적발·검거되었는데 매년 평균 40%씩 증가하고 있다.²⁰⁾

나. 3불외국인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위해

현재 중국에서의 “3불”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통계에 의하면 上海直轄市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18,835건의 “3불”외국인사건을 적발하였는데 그중 불법입경사건이 275건, 불법체류사건이 17,180건, 불법취업사건이 1,380건을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서 불법체류사건은 “3불” 외국인 사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3불” 외국인사건의 주요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체류사건은 매년 20%의 비례로 증가하고 있다.²¹⁾ 외국인의 “3불” 문제는 중국의 정상적인 출입경관리질서를 방해하고 노동력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계획생육, 환경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과 치안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18) 新華網(北京), 第3世界國家國民偷越中國數量上昇明顯, <http://news163.com/07/1128/14/3ld>

19) 불법체류란 합법적으로 입경하였지만 체류기간이 당시 정부가 비준한 기한을 초과한 위법행위를 말한다.

20) 黃碧峰, 論我國偷渡犯罪刑事立法的完善, 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年 10月, 제16쪽.

21) 郭建新, 在滬外國人“三非”案件的發展趨勢與世博後的防控對策, 上海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2010年 12月, 18페이지.

특히 “3불” 외국인인 중국에 입경한 후 합법적인 신분이 없고 생업도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단 생계의 유지가 어렵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련의 범죄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근년에 외국인이 불법입경한 후 절도, 강도, 마약매매, 살인, 부녀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는 마약매매, 경제사기 등 범죄사건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6년에 광둥성에 있어서 외국인의 마약범죄사건 106건 141명을 적발, 검거하였는데 2005년의 47건보다 1,3배 증가하였고, 경제사기사건 93건 115명을 적발, 검거하였는데 2005년의 28건보다 2,3배 증가하여 광둥성의 사회치안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외국인 범죄 유형으로 되었다.²²⁾ 예를 들면 2006년에 광둥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은 3명의 이란인과 1명의 아프카니스탄인이 국제형사경찰을 사칭하여 외국인의 재산을 강탈한 형사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다.

다. 북한주민의 밀출입국 문제

중국의 밀출입국문제는 그 규모상 아직 것처럼 엄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 밀입국한 외국인중 그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인이다. 자료에 의하면 근 30만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밀입국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내몽골지역에 불법체류하고 있다.²³⁾

그 주된 원인은 북한의 해마다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이다.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온 가족이 중국에 밀입국한다. 북한인이 중국에 밀입국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을 밀출국의 목적지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한국이나 일본 등 국가로 밀입국하는 도중이 전국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국제적·민족적 관계 등 원인으로 인해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북한인의 밀입국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중국을 비판하는 하나의 중요한 구실로 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중국위협론”을 운운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특히는 중국에 밀입국한 북한인들이 특정한 외국 “使館²⁴⁾ 난입” 수단을 사용

22) 邱 美, 廣東外國人“三非”問題管理研究, 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年 12月, 제10쪽.

23) 黃碧峰, 論我國偷渡犯罪刑事立法的完善, 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年 10月, 제17쪽.

함으로써 수차례의 국제적 마찰을 야기시킨 적이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10월 30일에 중국의 사법기관은 북한인의 밀입국 및 “사관 난입”을 조직한 일본인 加藤博을 체포하였다. 수사를 거쳐 밝혀진 바, 加藤博은 밀출입국 범죄조직과 결탁하여 선후하여 중국에 밀입국한 12명의 북한인을 조직하여 일본, 한국 등 나라에 밀출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14일에 발생한 북한밀입국자 “駐中 스페인 사관 난입사건”을 획책하였다.²⁵⁾ 2002년 1년간 중국주재 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북한밀입국자는 100여명에 달한다.²⁶⁾ 밀입국한 북한인들의 집단적인 “사관 난입”행위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3. 중국 밀출입국 범죄의 특징

20세기 90년대 이후 국제상 및 국내의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영향하에서 중국의 밀출입국범죄는 이전에 비해 많은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밀출입국범죄는 개개인의 산발적인 밀출입국행위로부터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밀출입국범죄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띠고 있다.

가. 家族性

家庭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가정, 가족을 중요시하고 있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중국의 밀출입경활동이 가족성의 특징을 띠도록 하였다. 오래 전에 밀출국하였던 사람들은 往往 귀향한 후 가옥을 신축하고 기업을 만들고 慈善金を 기부하는 등 각종 방식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공을 자랑한다. 이

24) 여기에서 말하는 使館이란 외국의 중국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리킨다.

25) 中華網, 20多名朝鮮人闖入駐華使館(1)

http://military.china.com/2h_cn/important//64/20020315/10225695.html, 2002. 3. 15.

26) bulunuo, 又有朝鮮人闖入獨駐京使館.

<http://www.phoenixtv.com/home/news/Inland/200301/23/25470.html>, 2002. 10. 31.

에 영향을 받은 본 가족 또는 기타 가족의 사람들은 분분히 이를 모방하여 밀출국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밀출국에 성공하였던 자들은 국외에서 이미 발을 굳건히 붙였기 때문에 자신 친족의 밀출국 지지에 필요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후자가 밀출국에 성공한 후 이를 위해 주소를 마련하여 주고 불법취업에 도움을 제공하여 준다. 이는 밀출국자 가족과 친족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²⁷⁾

나. 조직성

밀출입국범죄집단은 밀출입국을 조직함에 있어서 상당히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를 통해 밀출국할 경우, 밀출국자들은 甲 지역에서 물색하고, 선박은 乙 지역에서 세를 내고, 밀출국자들을 丙 지역에 모이게 한 후 다시 丁 지역에 가서 乘船하도록 한다. 또는 육지에서 途中移轉하고 해상에서 운송하고 境外에서 응접하는 등 방법을 사용한다. 매 단계마다 專擔者가 있고 각 단계간 전담자들로 이어진 연결고리는 엄밀한 밀출입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조직형식상 이들은 통상 遠隔操縱과 單線連絡방식을 취하며, 水平的 연락은 절대 하지 않는다. 밀출입국자간 상호 요해가 없고 상호간 연락도 하지 못한다. 蛇頭²⁸⁾는 통상적으로 배후에 은폐하여 조직·지휘하기 때문에 人蛇는 蛇頭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핵심조직자 신변의 측근마저도 전반 계획에 대해 파악할 수가 없다. 때문에 설사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반 계획의 실행에 영향이 미약하거나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밀출입국 범죄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요원의 추적을 용이하게 따돌리고, 행동이 과감·신속하고 동시에 여러 개의 통신기구를 사용하는 등 강한 범죄수사 대응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실무상 적발·검거되는 자들은 대부분이 밀출입국집단내부의 작은 頭目들 뿐이고 蛇頭는 국(경)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는다.

27) 陳哈菁, 謝天長, 偷渡問題的社會學分析, 福建省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2005(1), 21-26.

28) 중국의 民間에 있어서 불법출입국 범죄조직의 수모자를 蛇頭라고 하고 개개인의 불법출입국자를 人蛇라고 한다.

다. 地域性

이는 밀출국(국내)의 地域化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입국(국외)의 地域化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밀출국자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복건성, 절강성, 광둥성, 동북3성(즉 길림성, 요녕성과 흑룡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지역화는 국외의 지역화와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복건성의 밀출국자들은 주로 미국, 일본, 유럽에 밀입국하고, 절강성의 밀출국자들은 주로 유럽, 미국에 밀입국하며, 동북3성과 산동의 밀출국자들은 주로 한국에 밀입국하고, 광둥의 밀출국자들은 주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남아에 밀입국하며, 강소성과 상해시의 밀출입국자들은 주로 일본에 밀입국하고 있다. 향간에 “미국은 長樂을 두려워하고, 일본은 福清을 두려워하고 타이완은 平潭²⁹⁾을 두려워하며 세계는 福建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유행되고 있듯이 장악인은 주로 미국으로, 복청인은 주로 일본으로, 평담인은 주로 타이완으로 밀출국하고 전 세계가 복건인의 밀출국목적지라는 사실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 있는 “3불” 외국인도 지역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북3성의 “3불” 외국인은 주로 북한인이고, 광둥성의 “3불” 외국인은 주로 아프리카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며, 광서좡족자치주와 운남성의 “3불” 외국인은 주로 베트남인과 미얀마인들이다.

라. 國際性

중국이 밀출입국범죄는 조직적이고 다국적·다지역적인 범죄행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방대한 “불법이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국제밀출입국범죄조직은 주로 밀출입국을 획책·조직하는 집단, 타인을 운송하여 직접 밀출국시키는 범죄집단, 출국증명서를 편취하는 범죄집단, 출국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범죄집단 등 4개의 부분의 범죄조직으로 구성되었다.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주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도중이전국, 밀출경목적국, 및 경내의 인원 등이 포함된다. 범죄집단의 據點은 주로 미국, 캐나다, 태국, 콜롬비아, 홍두라스와 중국의 홍콩, 마카오, 타이완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000년 6월 19일에 발생한 영국 “多佛兒慘

29) 長樂, 福清, 平潭 등은 모두 福建省 所屬의 대외개방도시들이다.

案”에 있어서 蛇頭는 바로 네덜란드국적을 가진 華人이었다. 2001년에 광주시의 공안기관은 홍콩의 入境事務處와 협력하여 略號가 “9.22”(홍콩측의 약호는 “珊瑚魚”)인 타인의 밀출입국을 조직, 운송하고 출입국증명서를 위조하는 큰 범죄조직을 검거하였다. 본 사건에서 중국 공안기관은 6명의 범죄혐의자를 체포·구속하였는 바, 그중 중국 대륙인이 2명이고, 홍콩인이 3명, 미국국적의 華人이 1명이었다.³⁰⁾

마. 專門性

현재 밀출국범죄는 날이 갈수록 전문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법분자들은 밀출입국범죄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공안부 출입경관리국의 소개에 의하면 2004년에 광주시 공안국은 타인을 조직하여 밀출국을 한 범죄사건을 수사·검거하였는데 범죄혐의자 14명을 체포·구속하고 출입경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는 지하공장 2개를 색출·폐쇄시켰으며, 위조한 출입경 증명서 422개, 위조, 변조한 출입경 증명서의 사진원본, 원자재 1119장 등을 몰수하였다. 2005년 절강성 공안기관은 타인을 조직하여 밀출국한 범죄사건을 수사·검거하였는데 張××를 주모자로 하는 범죄집단은 2002년부터 2004년 기간에 여행단 관광조직이라든가 비즈니스 고찰단조직이라는 등 명목으로 선후하여 11차에 걸쳐 강소성, 복건성 등 14개 성의 231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서유럽국가로 밀출국시켰는데 그 불법자금총액은 1000여만위안에 달하였다. 관련사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밀출국할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매인당 평균 4만 달러 정도이고 최고로는 10만 달러가 지불한다고 한다. 이러한 거대 불법수익의 자극하에 각 나라의 밀출입국 범죄집단은 밀출입국의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밀출입국 범죄집단내부에 있어서 밀출입국자의 물색, 밀출입국 노선의 선택, 출입경 증명서의 신청·위조·편취, 밀출입기술의 훈련, 세관에 있어서의 응접, 운송·이전 등 각 단계간 모두 명확한 분업이 있고 각 단계간 상호

30) 金羊網, 粵港警方聯合“捕魚”. <http://www.vcwb.com.gb.conlenl> 2001.09.28, content, 258767.htm; 大洋論壇, 粵港搗毀特大偷渡偽造護照集團. <http://gzdaily.dayoo.com.gb,contentl> 2001.09.28 content 232131.htm.

관계는 통상 단독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범죄집단 구성원 역시 수사와 심사에 대한 대항능력 등 일정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제재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및 이에 대한 형사제재는 모두 행정법인 《공민출경입경관리법》,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또는 통합된 《출경입경관리법》이 아닌 현행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형법전인 1997년 형법전은 우선 제6장 “사회관리질서 방해죄”에 있어서 제3절 “밀출입경범죄”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 죄명과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밀출입경을 조직한 죄

본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타인을 조직하여 국(변)경을 밀출입한 범죄행위를 가리킨다. “타인을 조직하여 국(변)경을 밀출입”한다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2002년 1월에 반포·시행한 《타인의 밀출입경을 조직, 운송 등의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지도, 획책하거나 수모자의 지휘하에서 타인을 유인, 소개, 설복하여 국(변)경을 밀출입국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전 제318조는 본 죄에 있어서 2개의 법정형을 설정하였다. 즉 범죄의 정상이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의 병과한다.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① 밀출입국(경)범죄조직의 수모자; ② 여러차례 밀출입국(경)을 조직하거나 많은 사람을 조직하여 밀출입국(경)한 경우; ③ 밀출입국자의 중상, 사망을 초래한 경우; ④ 밀출입국자의 신체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한 경우; ⑤ 폭력이나 협박으로 검사에 항거한 경우; ⑥ 불법소득이 거대한 경우; ⑦ 기타의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는 경우.

범죄자가 불법출입경자를 살해하거나 상해, 강간, 매매한 경우, 또는 검사요원을 살해, 상해한 경우 경합범의 처벌원칙에 의해 처벌한다.

2. 출입경증명서를 편취한 죄

본 죄는 노무수출, 경제왕래 또는 기타의 명의로 속임수를 써서 여권, 비자 등 출경증명서를 편취하여 타인의 밀출입국(경)의 조직활동에 사용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가리킨다. 본 죄에 대하여는 2개의 법정형의 규정하였다. 즉 범죄의 정상이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란 최고인민법원의 《타인의 밀출입경을 조직, 운송 등의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밀출입국(경)의 조직에 사용하기 위해 5개 이상의 출경증명서를 편취하거나 불법소득이 30만위안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동시에 단위가 본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상기한 형벌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3. 위조·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경 증명서를 제공한 죄

본 죄에 관하여 역시 2개의 법정형을 설정하였다. 즉 범죄의 정상이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란 최고인민법원의 《타인의 밀출입경을 조직, 운송 등의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위조, 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 5개 이상 제공하거나 불법소득이 30만위안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4. 출입경증명서를 판매한 죄

본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여권, 비자 등 출입국(경)증명서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죄에 관하여 역시 2개의 법정형을 설정하였다. 즉 범죄의 정상이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란 최고인민법원의 《타인의 밀출입경을 조직, 운송 등의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권, 비자 등 출입국(경)증명서 5개 이상 판매하거나 불법소득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5. 밀출입경자를 운송한 죄

본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출입경자를 운송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본 죄에 관하여 형법 제321조는 3개의 법정형을 설정하였다. 즉 (1) 범죄의 정상이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한다. ① 여러차례 운송행위를 하거나 많은 사람을 운송한 경우, ② 사용한 선박, 차량 등 교통도구가 안전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③ 불법소득이 거대한 경우; ④ 기타의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2) 밀출입경자를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사상하거나 폭력이나 협박 등 방법으로 檢査에 항거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불법출입경자를 살해, 상해 강간, 매매하거나 검사요원을 살해, 상해한 자에 대하여는 경합범의 처벌원칙에 의해 처벌한다.

6. 밀출입경죄

본 죄는 국(변)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밀출입국(경)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전의 3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밀출입경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형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한다. 최고인민법원이 2002년 1월에 반포·시행한 《타인의 밀출입경을 조직, 운송 등의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의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밀출입경행위를 한 자로서 동시에 아래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로 인정한다. ① 境外에서 국가이익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밀출입경행위를 3차 이상 한 경우; ③ 타인을 유인하여 함께 밀출입경행위를 한 경우; ④ 밀출입경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밀출입국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밀출입경행위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 이로 부터 볼 때 중국법상 밀출입경행위가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정상이 엄중한 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상기한 6개의 밀출입경 관련범죄 가운데서 밀출입경죄를 제외한 기타의 범죄는 타인 밀출입국 방조범죄에 속한다.

이외에 1997년 형법전은 제9장 “독직범죄”에 있어서 2개의 타인 밀출입국 방조범죄를 규정하였다. 이 2개의 범죄는 모두 국가출입경 관리기관의 요원을 범죄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기한 6종의 밀출입국 관련범죄와 구별된다. 그 구체적 죄명과 형벌은 다음과 같다.

7. 밀출입경자의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한 죄

즉 여권·비자 및 기타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요원이 불법출입경을 시도하는 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하여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역에 처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란 여러차례 또는 많은 밀출입경자를 위해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하거나 범죄자를 위해 밀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8. 밀출입경자의 통행을 허가한 죄

여권·비자 및 기타 출입경증명서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의 요원이 불법출입경을 시도하는 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허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역에 처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란 여러차례 또는 많은 밀출입경자의 통행을 허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4절 개정법상 “3불” 외국인 및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1.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3불” 외국인

중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1985년에 제정·시행된 《공민출경입경관리법》과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두 개의 관리법은 20여년의 시행을 거쳐 2012년 6월에 하나의 《출경입경관리법》으로 통합되었으며 개정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에 있는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개정법상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경입경관리법의 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가. 엄격한 비자발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 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는 정책을 체현하였다.

개정한 출입경관리법은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을 중국에 초청하는 행위를 규범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청장을 낸 단위나 개인은 초청내용의 진실성을 보장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 명문화하였다. 또한 비자신청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중국 체류기간의 필요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비자의 발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외국인 체류·거주관리 강화

외국인의 체류·거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개정법은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거주허가서류의 관리·검사 및 숙박등록에 관한 제도를 규범화하였다. 또한 공민·법인·기타 조직은 “3불” 외국인이 있는 것을 발견한 시에는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외국인 취업관리 강화

외국인의 중국에 있어서의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개정법은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려면 응당 취업허가증서와 업종거주허가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불법취업의 개념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었는 바, 즉 외국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허가증서와 業種거주허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 하고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거나 업종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중국경내에서 취업하거나 외국유학생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업종범위 또는 시한을 초과하여 중국경내에서 취업한 것은 불법취업에 속한다.

라. 3불 외국인 처벌강화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1) 불법출입경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의 규범화와 처벌의 강화.

첫째, “불법출입경”에 대한 법적 해석.

구 출경입경관리법이나 그 시행세칙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위가 “불법출입경”에 속하는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출경입경관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출경입경” 행위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열거하고 있다. 즉 위조·변조하거나 편취한 출경입경증명서를 사용하여 출경·입경하거나 타인의 출경입경 증명서를 사용하여 출경·입경하거나 또는 변방검사를 도피하여 출경·입경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불법출경·불법입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둘째, 불법출입경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의 규범화.

개정법상 불법출경입경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는 當場審問·계속심문·구류심사·활동범위제한·강제송환 등이 포함된다.

출경입경관리법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장심문을 할 수 있고 불법출입경혐의가 있는 자 또는 불법출입경을 협조하는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속심문을 할 수 있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을 거쳤으나 여전히 혐의가 배제되지 않아 진일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심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류심사를 함에 있어서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시작하여야 하며 구류심사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구류심사를 해제해야 한다. 구류심사의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한층 높은 지방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6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의 구류심사기한은 그 국적이나 신분이 밝혀진 날부터 계산한다. 단, 외국인이 엄중한 질환중에 있거나 임신중 또는 1살 미만의 영아가 있거나 외국인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70세 미만의 노인이어서 구류심사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구류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활동범위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활동범위를 제한받은 외국인은 요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의 비준이 없이는 한정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활동범위제한의 기한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적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의 기한은 그 국적 또는 신분이 밝혀진 날부터 계산한다.

외국인이 출경명령을 받았으나 지정한 기한내에 출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강제송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송환의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강제송환을 받은 그날부터 1년 내지 5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다.

셋째, 불법입경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

1994년에 개정된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시행세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 불법입경한 외국인에 대하여 1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出境命令 또는 境外逐出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신 《출경입경관리법》 제71조는 불법입경자한 자에 대하여 1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된 출경입경관리법은 불법출입경자에 대해 협조한 개인이나 단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타인을 협조하여 불법출입경한 자에 대하여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함과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72조, 양벌제)

개정된 출경입경관리법은 부당한 수법으로 출입경증명서를 편취하여 출입경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속임수로 비자, 체류, 거주허가증서 등 출입경증명서를 편취한 자에 대하여 2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함과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73조)

개정된 출경입경관리법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 또는 기타 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증설하였다. 즉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동시에 초청한 외국인의 출경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1

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초청한 외국인의 출경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며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74조)

또한 불법입경한 외국인을 수용, 은폐한 자 또는 불법입경한 외국인을 협조하여 검사를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2천위안 이상 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단위가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는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79조)

개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출입경 등 본 법의 위반행위가 정상이 엄중하면 범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공안부는 경외추출에 처할 수 있고 경외추출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그 처벌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다. 공안부의 처벌결정은 終局決定에 속한다.

2)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의 규범화와 처벌의 강화.

첫째,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의 규범화.

개정법상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는 當場審問·계속심문·구류심사·활동범위제한·강제송환 등이 포함된다.

출경입경관리법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장심문을 할 수 있고 불법체류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속심문을 할 수 있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을 거쳤으나 여전히 혐의가 배제되지 않아 진일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심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류심사를 함에 있어서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시작하여야 하며 구류심사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구류심사를 해제해야 한다. 구류심사의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한층 높은 지방인민정부의 공안기관 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의 기한은 그 국적이나 신분이 밝혀진 날부터 계산한다. 단, 외국인이 임중한 질환중에 있거나 임신중 또는 1살 미만의 영아가 있거나 외국인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70세 미만의 노인이어서 등 구류심사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구류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활동범위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활동범위제한의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요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의 비준이 없이는 한정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활동범위제한의 기한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적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의 기한은 그 국적 또는 신분이 밝혀진 날부터 계산한다.

외국인이 출경명령을 받았으나 지정한 기한내에 출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강제송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송환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강제송환을 받은 그날부터 1년 내지 5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다.

둘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1994년에 개정한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시행세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시행세칙을 제16조, 제20조³¹⁾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체류의 외국인에 대해 警告의 처벌을 하거나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그 총금액은 5천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정상이 임중한 경우 출경명령을 병과한다.

그러나 통합된 출경입경관리법 제78조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경고의 처벌을 하고, 그 정상이 임중한 경우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그 총금액은 1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개정하였다.

3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D, Z, X, J-I를 표시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경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 현 공안국에 가서 외국인거주증서 또는 외국인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기한 거주증서의 유효기한이 바로 거주증서의 소지자가 중국거주를 허가받은 기한이다. 외국인거주증은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이고 외국인 임시거주증은 중국에 1년 이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비자 또는 거주증서의 유효기한이 만료 후 계속 중국의 체류, 거주가 필요한 경우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후견인 또는 기타 후견책임이 있는 자가 후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6세 미만의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게 한 경우 그 후견인 또는 기타 후견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고의 처벌을 하고 1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수용, 은폐한 자 또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협조하여 검사를 도피하게 한 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출경증명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단위가 전향의 행위를 한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는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법 제81조는 불법체류 등 본 법의 위반행위가 정상이 엄중하면 범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公安부는 경외추출에 처할 수 있고 경외추출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그 처벌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으며公安부의 처벌결정은 終局결정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의 규범화와 처벌의 강화.

첫째, 불법취업에 대한 법적 해석.

구 출경입경관리법이나 그 시행세칙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위가 “불법취업”에 속하는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출경입경관리법 제43조는 “불법취업”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허가증서과 業種거주허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 하고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거나 업종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중국경내에서 취업하거나 외국유학생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업종범위 또는 시한을 초과하여 중국경내에서 취업한 것은 불법취업에 속한다.

둘째,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의 규범화.

개정법상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는 當場審問·계속심문·구류심사·활동범위제한·강제송환 등이 포함된다.

출경입경관리법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장심문을 할 수 있고 불법취업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속심문을 할 수 있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을 거쳤으나 여전히 혐의가 배제되지 않아 진일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심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류심사를 함에 있어서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시작하여야 하며 구류심사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구류심사를 해제해야 한다. 구류심사의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건이 복잡한 경우 한층 높은 지방인민정부의 공안기관 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의 구류심사기한은 그 국적이나 신분이 밝혀진 날부터 계산한다. 단, 외국인이 엄중한 질환중에 있거나 임신중 또는 1살 미만의 영아가 있거나 외국인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70세 미만의 노인이어서 구류심사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구류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활동범위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활동범위를 제한 받은 외국인은 요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의 비준이 없이는 한정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활동범위제한의 기한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적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활동범위제한의 기한은 그 국적 또는 신분이 밝혀진 날부터 계산한다.

외국인이 출경명령을 받았으나 지정한 기한내에 출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강제송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송환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강제송환을 받은 그날부터 1년 내지 5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다.

셋째,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

1994년에 개정된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시행세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또는 노동부의 수권을 받은 기관의 비준허가가 없이 취업, 취직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취업, 취직을 終止시키는 동시에 1천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출경을 명령한다. 비준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그 고용행위를 종지시키는 동시에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용한 외국인의 출경에 필요한 전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통합된 출경입경관리법 제80조 제1항은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규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고 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소개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불법소개 1인당 5천위안의 과태료(총금액은 5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부과하며 단위에 대하여는 불법소개 1인당 5천위안의 과태료(총금액은 10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제80조 제2항)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불법고용 1인당 1만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총금액은 10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제80조 제3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체류, 거주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기타의 중국 법률,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중국 경내의 계속 체류, 거주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출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81조 제1항)

개정법 제81조 제2항은 불법취업 등 본 법의 위반행위가 정상이 엄중하면 범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공안부는 境外逐出에 처할 수 있고 경외출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그 처벌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으며 공안부의 처벌결정은 終局결정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3불” 외국인의 처벌에 관한 학계의 논의

상기한 내용과 같이 중국의 개정이전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이나 형법전 모두 “3불” 외국인중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배제하고 있다. 개정 통합된 출경입경관리법은 비록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강제송환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행정처벌에 그치고 형사제재는 배제하고 있다. 일면 학계에 있어서는 형법을 개정하거나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통일적인 《이민법》을 제정함으로써 “3불”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형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상기한 “3불” 외국인 제재의 형사화보다는 현행 외국

인입경출경관리법상 행정처벌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절차를 규범화하여 외국인 입경출경관리법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래에는 학계의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형사화 주장에 대해 간추려 소개하려고 한다.

가. 공민출경입경관리법과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을 통합·정리하고 국외의 선진적인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법설.³²⁾

일부 학자들은 주장에 의하면 선진국의 입법례를 볼 때 그 다수가 불법이민과 관련 각종 범죄와 형사제재를 통일적인 《이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상 인구가 가장 많은 발전도상국인 점을 감안하고 중국인이 국외으로의 이민과 외국인이 중국으로의 이민이 그 규모와 속도상 날이 갈수록 확대, 가속화하는 추세하에서 선진국가의 출입국관리법을 학습, 참조하고 중국의 실제적 상황과 세계화 발전의 추세에 착안하여 하루 빨리 통일적인 《이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법》의 구체내용상 “이민”과 “불법이민”의 개념을 도입하고 “법률책임” 부분에 있어서 “3불” 외국인 특히는 불법체류,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벌을 刑事化해야 하며, 또한 1997년 형법전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밀출입국 관련범죄의 규정을 《이민법》에 흡수·규정해야 한다.

나. 이민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고 형법전을 개정하는 동시에 “3불” 외국인에 관한 죄명과 형벌을 증설해야 한다는 개정설.³³⁾

다른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선진국의 입법례는 다수가 불법이민과 관련된 각종 범죄는 통일적인 《이민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볼 때 행정법규와 형법법규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중국은 1997년 형법전 개정시에 기왕의 附屬刑法의 입법례³⁴⁾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중국 형법의

32) 趙泉河, 趙桂民, 中國非法移民問題刑事法律對策研究, 經濟研究導刊, 2009年 第18期, 251쪽; 黃碧峰, 論我國偷渡犯罪刑事立法的完善, 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年 10月, 第54-55쪽.

33) 劉建國, 懲治與豫防偷越國(邊)境犯罪研究, 河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年 6月, 第28-30쪽; 趙泉河, 趙桂民, 中國非法移民問題刑事法律對策研究, 經濟研究導刊, 2009年 第18期, 251쪽; 黃碧峰, 論我國偷渡犯罪刑事立法的完善, 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年 10月, 第54-55쪽.

체계는 형법전과 특별형법의 두 개 부분만 포함하게 되었다. 《이민법》이라는 행정법에 불법이민과 관련된 각종 형사범죄와 형벌규정을 두는 것은 바로 부속형법의 입법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주장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민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 형법전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죄명을 증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다.

다. 학설의 검토

상기한 입법설과 개정설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타인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죄와 타인의 밀출입국을 운송한 죄에 있어서 법인범죄를 증설해야 한다.

법인을 “밀출입국을 조직한 죄”와 “타인의 밀출입국을 운송한 죄”의 범죄주체로 증설하게 되면 이러한 법인의 범죄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입국관리법규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타인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죄”에 있어서 “폭력이나 협박으로 검사에 抗拒”하는 행위를 “타인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죄” 또는 “타인의 밀출입국을 운송한 죄”에서 이탈시켜 독자적인 죄명인 “폭력이나 협박으로 출입국검사에 항거죄”를 증설해야 한다. 또한 형사실무상 “타인의 밀출입국을 조직한 죄” 또는 “타인의 밀출입국(경)을 운송한 죄”와 경합이 된 경우 결과가중범³⁴⁾이 아닌 경합범의 예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

셋째, “밀출입국죄”(偷越國境罪)를 취소하고 “불법출입경죄”(非法出入境罪)를 설정해야 한다.

34) 附屬刑法의 입법례란 행정법과 민사법 등 비형사법률상 형벌규정의 조문을 두는 입법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각종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규정” 즉 행정형벌의 입법례가 바로 附屬刑法의 입법례에 속한다.

35) 형법 제318조 제1항과 제321조 제2항은 밀출입경자를 조직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치사상한 경우 또는 폭력, 협박 등 방법으로 檢査에 항거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현행 출경입경관리법상 불법출입경(非法出入境)의 개념과 일치하게 되고 학계의 관련개념해석상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

넷째, “불법이민고용죄”를 증설해야 한다.

불법이민활동중 일종의 보편적인 현상은 불법이민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 나라의 고용주들이 자체의 경제이익을 위하여 불법이민을 고용하는 것이고 이 또한 실제상 불법이민을 위하여 은닉장소와 불법거주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불법이민에게 취업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불법이민을 억제하는 일종의 방법이 된다. 미국의 《이민법》 등 법률은 불법이민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250-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고용외국인죄”로서 6개월의 감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마카오형법은 불법이민을 고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감금에 처할 수 있고 누범에 속하면 2년 이상 3년 이하의 감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도 이러한 국내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불법이민고용죄”를 증설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다섯째, “불법이민취업소개죄”를 증설해야 한다.

본 국의 공민과 단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의 취업시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이민취업소개죄”를 증설해야 한다. 국외에도 이러한 입법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1997년에 일본은 새로 제정한 《국경출입관리및난민인정법》은 “불법취업조장죄”를 설정하여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소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여섯째, “불법입경자의 수용·은닉죄”와 “불법체류죄”를 증설해야 한다.

미국의 《이민법》은 제273조로부터 제277까지 불법입경한 외국인을 은닉한 죄 등을 규정하였고, 영국이 1983년부터 시행한 《이민법》은 타인의 불법입경활동에 참여, 협조하거나 불법입경한 외국인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4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이하의 감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1999년의 이민법개정안은 불법체류자를 은닉, 수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병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홍콩의 형법은 불법체류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10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감금

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도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2년 이하의 감금 또는 20000주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거나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시행세칙》은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출경을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취직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불법취업이나 불법취직을 중지시키고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출경명령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경미한 행정처벌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등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응분한 통제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도 상기한 국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불법입경자의 수용·은닉죄”와 “불법체류죄” 등을 증설해야 한다.

제5절 소결

본 문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모두 현행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타인의 밀출입국 방조죄에 속한다. 그 예외의 범죄가 있다면 바로 형법전 제322조의 규정상 “밀출입경죄”인데 이는 밀출입경자 본인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만, 동시에 “밀출입경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라는 객관적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境外에서 국가이익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밀출입경을 3차 이상 하거나 타인을 유인하여 함께 밀출입경행위를 하거나 밀출입경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밀출입국행위를 하는 등 경우를 포함한다. 중국의 현행법은 이외 기타의 불법출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3불” 외국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 즉 형법전 제322조 규정상 밀출입경자 이외의 “3불” 외국인은 모두 출경입경관리법상 행정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 있어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현재 규모나 양으로 볼 때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 영향도 날로 심각해져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발,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 경내에 있는 “3불” 외국인의 문제도 상기한 출입경관리법 위반범죄와 직결되어 있고 또한 “3불” 외국인의 문제 자체도 날로 심각해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의 “3불” 문제는 나라의 정상적인 출입경관리질서를 방해하고 노동력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계획생육, 환경보호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과 치안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3불” 외국인은 중국에 입경한 후 합법적 신분이 없고 생업도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단 생계의 유지가 어렵게 되면 필연 일련의 범죄사건을 저지르게 된다. 근년에 외국인이 불법입경 또는 불법체류한 후 절도, 강도, 마약매매, 살인, 부녀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매매, 집단사기 등 범죄사건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입국,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중국경내에서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國家分裂煽動罪. 형법전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의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의 통일을 파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구역이나 관제에 처한다. 수모자 또는 죄행이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國家政權顛覆煽動罪. 형법전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날조, 비방 기타 방법으로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구역이나 관제에 처한다. 수모자 또는 죄행이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제106조는 행위자가 境외의 조직이나 개인과 결탁하여 국가분열선동죄나 국가정권전복선동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엄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12월에 반포한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출판물 관련형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 제1조는 “출판물에 국가의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거나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선동한 내용을 게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출판, 인쇄, 복제, 발행, 전파한 경우 형법전 제103조 제2항 또는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분열선동죄 또는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입경하거나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있어서 각종 “사이비종교조직(邪教組織)”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1999년 10월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반포시행한 〈邪教組織을 조직, 이용하여 범죄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제7조는 “邪教組織을 조직, 이용하여 국가의 분열과 국가통일의 파괴 또는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조직, 획책, 실시, 선동한 경우 형법전 제103조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분열죄, 국가분열선동죄 또는 국가정권전복죄,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6월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반포시행한 〈邪教組織을 조직, 이용하여 범죄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2)〉 제2조는 邪教組織의 宣傳物을 제작, 傳播하여 국가의 분열과 국가통일의 파괴를 선동하거나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선동한 경우 형법 제103조 제2항 또는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분열선동죄 또는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間諜罪. 형법전 제110조 및 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간첩행위중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1) 간첩조직에 가입하거나 간첩조직 또는 그 대리인이 맡긴 임무를 접수한 경우; (2) 적을 위해 포격의 目標을 지시한 경우.
4. 境外를 위해 국가비밀, 정보를 절취, 염탐, 매수, 불법제공한 죄.
형법전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외의 조직, 개인을 위해 국가비밀, 정보를 절취, 염탐, 매수, 불법제공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의 박탈에 처할 수 있다.

2001년 1월에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境外를 위해 국가비밀, 정보를 염

탐, 매수, 불법제공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데 관한 해석〉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전 제111조에 있어서의 “情報”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어 공개하지 않았거나 유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가리킨다. 행위자가 비밀등급³⁶⁾을 표기하지 않은 사항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경외의 조직이나 개인을 위해 절취, 엍탐, 매수, 불법제공한 경우 형법전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境外를 위해 국가비밀, 정보를 절취, 엍탐, 매수, 불법제공한 죄로 처벌한다.(제5조) 인터넷을 통하여 경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국가의 비밀이나 정보를 발송하여 보낸 경우 형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6조)

2001년 6월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반포시행한 〈邪教組織을 조직, 이용하여 범죄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2)〉 제8조는 邪教組織의 구성원이 경외를 위해 국가비밀, 정보를 절취, 엍탐, 매수, 불법제공하거나 절취, 엍탐, 매수 등 불법의 수단으로 국가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국가의 絶密, 機密서류·자료·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그 출처와 용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국가비밀을 누설한 정상이 엄중한 경우, 각기 형법 제111조가 규정한 경외를 위해 국가비밀, 정보를 절취, 엍탐, 매수, 불법제공한 죄, 형법 제182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비밀의 불법취득죄, 형법 제182조 제2항이 규정한 國家絶密, 機密서류·자료·물품의 불법소지죄, 형법 제398조가 규정한 고의로 국가비밀을 누설한 죄와 과실로 국가비밀을 누설한 죄로 처벌한다.

2009년 8월에 반포시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안을 유지할 데 관한 결정〉 제2조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행위중 하나라도 범죄가 구성되면 형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2) 인터넷을 통하여 국가비밀과 정보 또는 군사비밀을 절취하거나 누설하는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36) 《중화인민공화국비밀법》의 유관규정에 의하면 국가의 비밀등급은 絶密級비밀, 機密級비밀 및 秘密級비밀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現有의 출입국관리법 체계와 구체적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 관련 형법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대상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절차를 규범화하는 것은 형사정책 조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건으로 되는 것은 학계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불”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벌을 형사제재화 하는가 아니면 일부 다른 학자들의 주장처럼 원래의 출경입경관리법의 기초상 행정처벌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절차를 규범화 하는가 하는 선택의 판단에 달려 있다. 2012년 6월에 개정된 출경입경관리법은 중국의 입법기관이 결과적으로 후자를 선택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3불” 외국인 문제의 엄중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3불” 외국인에 대한 규제의 점진적인 강화를 형사정책조절의 선택으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제3장

2012년 6월 중국출입경관리법의 수정배경 및 그 내용

2012년 6월 중국출입경관리법의 수정배경 및 그 내용

제1절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의 수정 및 그 내용

2012년 6월 30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제27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본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8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곧 총칙, 중국 국민출경입경, 외국인입경출경, 외국인정류거류, 교통운송편 출입국 심사, 조사와 송환, 법률책임, 부칙이 그것이다; 이 법은 모두 9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취지, 행정주체의 책임, 업무기재와 원칙, 통일적 출경입경관리정보 센터건립, 중국국민출경입경의 절차, 출경불허사유, 외국인입경출경절차, 비자, 입경불허사유, 외국인정류거류취업, 영구거류, 교통운송편 출입국심사, 위법행위 및 인원의 조사와 송환, 법률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거의 10년 정도 준비하였고, 여러 방면의 수 차례 조사와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차 심의를 거친 후에 반

포하게 된 것으로서 폭넓은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1. 통일입법

198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국민 출경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 국무원은 양 법률의 시행세칙을 나누어 제정하였다. 중국의 현행 출경입경관리제도는 기본적으로 중국 국민, 외국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입법을 한 것이다. 200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 통과한 여권법은 중국국민출경입경관리법에서 여권과 관련된 신청 및 수령 내용을 이법에 집에 넣은 것이며, 이번에 출경입경관리법을 제정한 것은, 중국국민출경입경관리법에서 여권 신청 및 수령 이외의 내용과 함께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을 조정하여 합친 것이라고 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제2조는 중국국민출경입경, 외국인입경출경, 외국인 재중국경내 정류거류의 관리 및 교통운송편출경입경의 출입국심사에,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시행 후, 현행의 중국국민 출경입경관리법과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은 동시에 폐지할 계획이다.

2. 관리와 서비스의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하는 원칙구현

출입경관리는 곧 국가안전, 주권, 사회질서 및 정상적인 출입경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이고, 국민의 합법적인 왕래를 돕고 경제사회발전 및 국제교류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로써 출입경관리 업무는 마땅히 관리와 서비스 모두를 중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제8조에서 출경입경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부서와 기구는 마땅히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서비스와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공정한 법집행과 편리하고 높은 효율성, 안전유지와 보호 및 간편한 출입국경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본 법의

구체적 제도의 계획 역시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건을 갖춘 항구와 출입경 출입국심사기관은 마땅히 중국 국민의 출경입경을 위해 전용 도로 등의 편리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고, 국경을 넘을 때 비자면제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임시입경제도의 완비와; 거주국외 중국국민이 국내에서 금융 등 사무를 처리할 경우 본인의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규정에 맞는 전문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 등의 원인으로 정류를 거류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은, 비준을 통하여 외국인거류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비자제도 실시를 위해 법률적 근거 등을 제공하였다.

3. 행정주체 직책구분

중국의 출입경관리권은公安, 외교(외사)의 양대 계통으로 나뉘어져 있다. 公安부, 외교부는 각자 직책에 따라 출경입경 사무와 관련한 관리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주재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 위탁의 기타 해외기구도 경외에서 외국인 입경비자발급을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公安기관과 그 출입경관리기구도 외국인 정류, 거류관리를 맡는다. 출입국심사기관은 출입국심사 실시를 책임진다. 公安부, 외교부는 각자 직책범위 내에서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公安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위탁을 하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문은 외국인 입경, 정류, 거류신청을 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公安부, 외교부가 출경입경 사무관리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및 관련 부문과의 밀접한 협동 및 각자 직책에 따라 분업하며,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4.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관리 및 처벌 강화

출입경 인원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입경, 불법거류, 불법취업문제(이하 “삼불(三非) 문제”로 약칭)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

며, “삼불”문제는 국가주권과 안전, 경제발전 및 사회치안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삼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엄격한 비자발급제도와 입경절차, 외국인 정류, 거류관리 규범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업무관리를 규범화하였으며, “삼불”인원의 조사 및 송환조치와 법률책임을 규정하였다.

5. 몇 가지 새로운 제도확립

첫째, 관리부문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건립한다. 현재 출입경관리 정보계통은公安, 외교 등 각 부문으로 나뉘어 건립되어 있으나, 발전 경향으로 볼 때, 마땅히 국가가 통일된 출입경 관리정보 플랫폼을 건립하고, 각 부문간의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되게 한다. 이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규정은 통일된 출경입경관리 정보 플랫폼 건립과 관련관리부문의 정보공유 실현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지문 등 인체 생물기술 채용.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출입경인원 지문 등 인체생물정보를 수집, 보관할 수 있고, 출입경 출입국관리심사시 비교, 대조할 수 있으며, 출입경인원의 신분 식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항구통관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출경입경관리를 강화하며,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적극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보통비자 “인재영입”류 증설.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 보통비자 중 업무, 학습, 친지방문, 여행, 상업활동, 인재영입 등 외교나 공무가 아닌 사유로 입경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응한 종류의 보통비자를 발급하고, 보통비자에 “인재영입”류의 규정을 증설하여, 더 많은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여 더 좋은 인재와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 입법배경고찰

1. 사회발전의 추진

중국의 대외개방이 심화되고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중국 국민의 출입경 인원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심사부분의 통계에 따르면, 1978년 중국 출입경 인원은 단지 연500여만명이었고, 2001년 이미 연 2억189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수로는 40배를 넘어섰다. 2007년 전국 출입경 출입국심사기관이 심사한 출입경 인원은 모두 연 3.45억명³⁷⁾이고; 2008년 상반기 전국 출입국심사기관이 심사한 출입경 인원은 연 1.74억명³⁸⁾; 2009년 전국 출입경 인원은 연 3.48억명³⁹⁾; 2010년 전국 출입국 심사기관이 심사한 출입경 인원은 연 3.82억명⁴⁰⁾; 2011년 전국 출입경 출입국심사기관이 검사한 출입경 인원은 연 4.11억명⁴¹⁾; 2012년 상반기 전국 출입경 출입국심사기관이 심사한 출입경인원은 연 2.08억명⁴²⁾에 이른다. “대량으로 들어오고, 대량으로 나가며,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가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이미 중국 출입경 활동의 기본특징이 되었으며, 이러한 특징 배후는 사회의 심도있고 신속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의 실질적인 입법배경이라고 하겠다.

가. 경제발전 새로운 상황의 수요

첫째, 국제노동력의 유동이 가속화되고, 출입경 노무가 나날이 활발해질 것이다. 세계경제 일체화의 발전과정에서, 생산의 국제화와 자본의 국제유동 및 확대는 노동력의 국제유동 및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중국은 노동력 자원이 풍부한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대외 노무협력수출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37)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558680.html>.

38)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37/n1342/n803715/1334390.html>.

39)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2287060.html>.

40)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2667071.html>.

41)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2841330.html>.

42)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3326839.html>.

출국노무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기술(지적능력) 유동의 가속화이다. 중국경제는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반드시 힘써 외자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국외의 선진기술, 관리경험을 배우고 대대적으로 도입하며, 고급소질의 인재를 유입한다. 국제기술(지적능력)유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급소질의 인재가 출입경 활동의 주요부분이 되었으며, 주로 하나는 외국전문가, 유학생, 프로젝트 기술요원 등 경제, 문화 등 각개 영역에서 더욱 많이 출현할 것이며, 둘은 각종 형식의 출국유학, 연수, 훈련, 포럼 등 활동이 더욱 빠른 속도로 대폭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여행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출입경 여행인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여행업과 출입경관리업무 정보는 관련이 있으며, 서비스업무의 점차적인 개방과 여행업의 발전에 따라, 출입경 인원의 구조에 비교적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출입국 취업서비스업과 여행 인원수는 전체 출입경 인원수에서 비울적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다.

나. 국가주권, 안전 및 출입경 질서유지의 필요

출입경관리는 국가대외행정관리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그 주요임무 중의 하나는 국가주권, 안전과 이익보호이다. 출입경관리는 국가주권과 중앙직권의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대외적으로 출입경관리국가 주권의 통일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주권과 주권평등을 상호 존중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국가주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의 주권국가는 외국인 입경, 거류를 허가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은 어떠한 주권국가가 그 입경, 거류의 허락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국가안전은 국가의 독립, 국내 각 민족의 통일과 국가영토의 온전성 및 국가내부 업무의 비밀보장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은 현재의 국가안전은 중대한 형세에 직면해 있는데, 국내외 각종 적대세력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경외의 반중국세력, 분열세력, 테러분자 및 전염병, 재해 등의 요인의 심각한 방해와 영향이 그것이다. 둘째, 출입경질서의 유지이다. 항구의 “크게 들어오고 크게 나가며”,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가”현상은 이미 중국 대외교류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으며, 이로써 어떻게 항구의 정상적인 출입경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항구의 기능효율을 증

강시키려는가는 양호한 출입경질서를 유지·보호하는 중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출입경권과 인권보호

중국 국가와 시민사회 이분의 진보발전에 따라, 출입경권은 하나의 기본인권으로 보장호소가 강렬해졌다.

출입경권과 관련하여,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2항은 “사람은 모두 어떠한 국가를 떠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국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그의 국가로 되돌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출입경권의 세계공동기준으로 인식된다. 1966년 《시민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규약》 제12조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2), (3), (4)항 규정에서 공평과 정의의 국가는 마땅히 그 국민을 위하여 제공하는 최저의 보편적 기준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실무에서 2009년 3월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는 이미 164개 국가가 1966년 《시민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규약》을 비준하였으며, 이로써 출입경권 승인은 기본권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86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입경관리법》 제1조는 “중국 국민이 중국 국경을 출입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차로 법률의 고도와 인권의 측면에서 국민의 출입경권을 승인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출입경관리법》 제1조 규정이 가리키는 국민이 향유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내포와 외연이 《시민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규약》 제12조의 규정과 같은 것인가? 현재까지, 중국은 어떠한 법률이나, 법규, 규장 혹은 정책이 “출입경권”의 내포된 의미의 한계를 설정하지는 못했다.

비록 각국 출입경권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공동의 출입경권 기준은 존재하고 있다. 연합국 인권위원회는 1966년 《시민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규약》이 포함하고 있는 출입경권은 보편적인 최저 기준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모두 출입경권의 “국가기

준”을 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시아 국가는 경제발전에 치중한 출입경권 기준을 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아시아국가는 “인권이 본질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구체적인 인권기준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인권국제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내포된 의미가 매우 풍부하고 동시에 상이한 국가와 지구의 역사, 문화 및 종교가 커다란 격차를 가지고 있음을 역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

출입경권은 기본인권의 하나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출입경관리의 또 하나의 주요한 임무는 국민의 출입경활동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현행의 관리체계는 지나치게 공권적인 통제와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출입경인 권리보장과 보호에는 부족한데, 공권이 강하고 사권은 제한적이며, 구속이 지나치고 보장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관리는 과도하게 엄하고, 업무가 공식이어서, 핵심적인 구현은 “조건부 심사비준, 관대함과 엄격함의 적정”의 조절원칙을 실행한 바, 곧 출입경 신청의 심사와 비준에 대해서 출국 이유가 없는 중국 국민은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출입경권의 보호와 실현은 출입경관리의 핵심이며, 신청인은 국가기관에 대해 출국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류사회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2원 대립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민주법치건설의 심화발전 및 국민의식과 사회자치능력이 높아져감에 따라, 중국 시민사회⁴³⁾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이분의 진보는 이미 처음으로 그 구조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혁명은 심도 있게 중국 국가의 이념 및 운용의 방식을 변화시켰는데, 출입경 관리측면에서 국가는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진지하게 대처하고, 강제성 법률을 관철하는 동시에 국민 서비스를 중시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경제발전의 새로운 형세 혹은 국가주권, 안전 및 출입경 질서의 유지와 보호, 출입경권은 하나의 기본 인권보장의 호소가 되었고, 모두 출입경 관

43) 市民社会, 指个人、团体在自愿和契约的基础上进行活动, 以实现自身的物质利益和社会交往的不受国家直接干预和控制的独立自主组织和非官方亦非私人的公共领域, 中国社科院法学研究所《法律辞典》编委会: 《法律辞典》, 法律出版社 2003年版, 第1299页.

리법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절박한 과제와 필요를 제기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출경입경관리법》은 이에 대한 응답과 실천이 된 것이다.

2. 현행 출입경관리법률제도의 급박한 개선필요

중국 출입경관리가 적용하고 있는 법률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 표현형식을 살펴보면 주로 국내법규범과 국제법규범의 두 가지 종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내법규범은 주로

- (1)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경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여권법》,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타인의 밀입국(변)경 운송, 조직범죄에 관한 보충규정》
- (2)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국민출경입경관리법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시행세칙》, 《중국국민의 사적 업무로 홍콩지구 또는 마카오지구 왕래에 관한 임시관리 방법》, 《중국국민 대만지구 왕래의 임시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 심사 조례》
- (3) 부문규장:公安부·외교부 단독으로 혹은 국무원 관련 부처와 위원회와 함께 반포한 규장은 주로: 《사적인 출입경 중개활동관리방법》, 《중국국민출국 여행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통여권과출입경통행증발급관리방법》, 《해외파견노동자출국수속방법》 등이다.

국제법규범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제·사회와 문화권리 국제조약》, 이 조약은 1976년 1월 3일 발효하였다. 1997년 10월 27일 중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나) 《시민권리와 정치권리 국제조약》, 이 조약은 1976년 3월 23일에 발효하였고, 1998년 10월 5일에 중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서, 이 조약은 중국에 구속력이 없다고 하겠다. (다) 《비엔나영사관계조약》, (1979년 7월 3일 중국은 이 조약에 가입하였고, 조약은 1979년 8월 1일에 발효함) 《비엔나 외교관계조약》(1964년 4월 24일 발효, 1975년 11월 25일 중국은 이 조약에 가입하였고, 12월 25일 중국에 대해서 발효됨) 양 조약은 외교와 영사인원의 출입

경관에 대해 규정을 만든 것이다.

중국의 출입경관리법률제도는 구소련 출입경관리방식을 참조하여 점차적으로 건립한 것이다. 수 십년간의 탐색과 발전을 거치면서 중국은 대외교류와 경제발전 및 개혁개방의 심화와 국제교류가 나날이 빈번해 짐에 따라 중국 출입경관리제도는 폐쇄에서 개방으로, 엄격함에서 넓은으로, 정태성에서 동태적 관리로 진전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외에 홍콩, 마카오의 반환과 세계무역조직 가입 등은 모두 중국 출입경 관리법제에 발전계기와 새로운 내용을 제공한 것이다. 비록 중국의 출입경관리법제화 건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였으나, 출입경관리법률 체계는 충분히 과학적, 합리적이지 못하여 부분법률·법규는 이미 상황의 변화와 경제사회의 발전요구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출입경관련 측면의 법률과 국제이민법실무와의 차이는 크다고 할 것이다. 중국 출입경법률제도의 개선의 필요는 주로 다음의 요인이라고 하겠다:

법률의 분산. 출입경관리법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는데, 즉 중국 국민, 외국인, 홍콩거민, 대만거민 등 상이한 주체에 따라 입법을 하였으며, 법률적용은 대상은 단일하고, 적용범위는 협소하며, 입법자원은 낭비되고 법집행은 편리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법률의 많은 공백. 《중화인민공화국국민 출경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입경출경관리법》 및 그 시행세칙 등 출입경관리법규 입법은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고, 당시 역사적인 객관적 원인으로, 대다수 입법은 “조악하고 상세하지 않은”방식을 취하였으며, 법률 원문은 비교적 간단하게 핵심만을 요약하였는데, 법률조문은 비교적 원칙적으로 추상적이며, 법률언어는 상대적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률법규의 운용성은 강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출입경관리와 국내외 정황의 변화와는 밀접한 관계로, 관리업무는 대등원칙을 따르고 국가별 정책을 강구하였고, 비교적 강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출입경 관리법은 비교적 많은 입법적 공백을 남겨두었는데, 출입경 사무의 조정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게 된 것이다. 실무에서 상당량의 출입경사무는 규장 이하의 규범성문건(어떤 것은 내부분건, 비밀문건)으로 조정된 것이다.

법률은 출입경인 권리보장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현행 출입경관리 법률법규로 인하여,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국민 출경입경관리법》, 《중화인

민공화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입법의 역사배경으로, 이 두 개의 법이 “조건부 심사, 넓음과 엄격함의 적정”의 조절원칙을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역시 지나치게 공권력의 관리와 통제를 강조하였으며, 출입경인권익보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성숙한 실천은 정착되지 않았다. 국무원 주관부문은 출입경관리의 법률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련의 규장제도를 반포하였는데, 특히 여권발급규범, 단일심사 비준규범, 비자업무규범 등이며, 이러한 규장제도는 처음의 몇몇은 포괄적이고 원칙적 규정을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운용성을 증가시켰으며, 실무에서 이러한 성숙한 방식은 법률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입경관리법률법규의 많은 규정과 세계 보편적 방법은 서로 맞지 않으며, 특별히 WTO 규칙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WTO가입이래로 WTO에 대한 승낙의 이행을 위하여, 중국 정부는 이미 국가와 지방이 반포한 WTO규칙과 부합하지 않은 법률·법규를 크게 깨끗이 폐지하였고, 현행의 행정법률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WTO는 행정법규, 규장이 자신의 상위입법과 서로 일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규칙 및 중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 협의와도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TO 투명도원칙에 따라, 각 구성원은 모두 국제투명도 의무를 가져가 하나, 현재 중국 출입경 실무에서, 출입경관리는 법에 따른 행정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중화인민공화국국민 출경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및 기타 몇몇 법률법규와 WTO 투명도원칙의 요구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 WTO 승낙에 대한 실행을 위하여, 전국 통일의 출입경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출입경업무의 현실정황은, 출입경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불법입경, 불법거류, 불법취업 외국인 사건이 점차 증가하며, 국경 통제, 검사임무는 나날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반 밀입국 업무의 정세는 중대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방적대세력, “파룬궁(法輪功)”, 국제범죄조직의 침투, 외국인 밀집거주 등의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 현재의 형태는 20세기 80,90년대의 출입경 관련법률과 현재의 출입경 관리체계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명백히 이러한 현상과 추세의 발전에 힘없이 대응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출입경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은 필연

적이고 강렬한 호소가 되었다. 2005년 4월부터 중국은 종합적으로 초안하여 출입경관리법을 공포하였으며, 수년에 걸친 오랜 입법의 길을 거친 후, 출경입경관리법의 입법 진행이 명백히 가속화되었다. 2011년 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첫 번째 심사를 회부하면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의견을 구한 후, 출경입경관리법안 초안이 2012년 4월 24일 개최된 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6차 회의심의회에서 재차 제청되었으며, 2012년 6월29일 개최된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는 제3차 이 법률초안을 심의하였다. 2012년 6월 30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3. 불법입경,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규제 및 그 처벌강화

출입경인원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불법입경,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현상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 외국인 입경은 거의 연74만명에 이르고, 2011년은 이미 연2711만명에 달하였다. 1980년 재중국 거주 반년이상의 상주 외국인은 거의 2만명, 2011년에 이 숫자는 거의 60만명에 이른다. 2000년의 재중국 취업 외국인은 약7.4만명, 2011년 말 22만명으로 증가하였다.⁴⁴⁾ 2007년 전국 불법 출입경 수사체포 인원은 연4489명이고, 타인 불법 출입경을 조직적으로 도운 인원은 연150명이며, 기타 출입경관리법률, 법규위반은 연5.37만명이다.⁴⁵⁾ 2008년 상반기, 전국 불법 출입경 수사체포 인원은 연2705명이고, 각종 출입경관리 법률, 법규 단속처리 인원은 연2.6만명이며, 도피자 인터넷 수사체포 인원은 273명이다⁴⁶⁾; 2009년 전국 불법출입경 수사체포 인원은 연3431명에 이르고, 기타 각종 출입경관리법률, 법규위반 단속인원은 연6.5만이다⁴⁷⁾; 2010년 전국 불법출입경 수사체포인수는

44) 来源于中国人大网站 http://www.npc.gov.cn/huiyi/cwh/1127/2012-07/02/content_1728589.htm.

45)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558680.html>.

46)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37/n1342/n803715/1334390.html>.

47)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2287060.html>.

연4721명이며, 기타 각종 출입경관리법률, 법규위반 단속인원은 연5.7만명이다⁴⁸⁾; 2011년, 전국 밀입국 수사체포인원은 연2999명이고, 기타 출입경관리법률, 법규 수사체포인원은 연4.9만명에 이르며, 인터넷 추적 수사체포인원은 1140명에 이른다.⁴⁹⁾ 2012년 상반기, 전국 출입경 출입국심사 기관이 불법출입경 수사체포인원은 연1337명이고, 기타 출입경관리법률, 법규 위반수사체포인원은 연2.42만명이며, 도피자 인터넷 수사체포 인원은 343명에 이른다.⁵⁰⁾

최근 10년이래로, 외국인 입경인수는 연평균 10%정도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3불”문제 역시 나날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관리상의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역시 많은 형사범죄의 우환을 남기고 있다.⁵¹⁾ “3불”문제는 국가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사회충돌의 문제가 되었으며, 그것은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을 해치며 국가의 경제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한한 취업자리와 사회자원을 빼앗는 일이고, 사회치안 등의 공공질서에 대해 중대한 폐해를 초래하며, 범죄를 발생시키는 온상이 되는 것이다. “3불”문제는 각 국가가 출입경관리 중점규제 및 타파의 대상이며,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3불”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관여를 하였는데, 따라서 규제강화와 “3불”문제의 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의 커다란 특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 “3불”문제의 대응강화는 주로 다음과 같다:

4. 엄격한 비자발급제도 및 입경절차

먼저, 비자측면에서, 첫째 초청행위 규제로서, 초청장 발급의 단위(직장) 또는 개인은 초청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였으며, 허위 날조하여 비자를 취득한 비자에 대해서는 벌금, 구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에게 초청장이나

48)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2667071.html>.

49)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2841330.html>.

50) 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网站 <http://www.mps.gov.cn/n16/n1252/n1702/n2347/3326839.html>.

51) 来源于中国人大网站 http://www.npc.gov.cn/huiyi/cwh/1127/2012-07/02/content_1728592.htm.

기타 신청자료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초청외국인의 출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명한다. 둘째, 명확히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상황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제21조 외국인은 다음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1) 출경 추방에 처하거나 출경 송환이 결정된 경우, 입경불허 규정의 연한을 채우지 않은 경우; (2)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해를 끼칠 기타 전염병이 있을 수 있는 경우; (3)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범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4) 비자신청과정에서 허위 날조하거나 중국경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5) 비자기관이 제시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6) 비자기관이 비자발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정황이 있는 경우. 셋째, 비자연기 규범이다. 외국인 입경출경관리법 및 그 시행세칙은 비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연기의 기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비자연장 정류(홀딩)기한을 규정하여, 누적하여 비자가 원래 밝힌 정류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항구비자의 완비로서, 항구비자기관이 발급한 보통비자는 단수 입경유효 비자로서 정류기한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신청인은 마땅히 신청비자의 항구로 입경해야 한다.

다음으로, 엄격한 입경절차인데, 외국인이 입경할 경우, 반드시 출입경 출입국 심사기관에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 증서, 비자 또는 기타 출입경 허가 증명을 제시하여 검증 받아야 하며, 규정의 수속을 이행하고, 검사허가를 경유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입경불허의 정황을 명확히 하였는데, 제25조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 입경을 불허한다: (1) 유효한 출경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출입국심사 받는 것을 거절, 도피하는 경우; (2) 본법 제21조 제1조 제1관 제1항에서 제4항 규정의 정황이 있는 경우; (3) 입경후 비자 종류와 부합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가 입경불허의 기타 정황을 규정한 경우.

5. 외국인 정류거류관리 강화

중국에 온 외국인의 정류거류 증서처리 상황 및 제출이 필요한 자료, 거류기한 연장의 처리절차, 영구거류권 획득의 정황을 규범화하고,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외국인 거류증서 불발급 정황을 규정한 바, 제31조 외국인은 다음의 정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거류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 거류증서를 반드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비자소지; (2) 신청과정에서 허위 날조가 있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관련증명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중국 관련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의 거류에 부적합한 경우; (5) 비자기관이 외국인거류증서발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외에, 검사확인과 주거등기제도를 확립하고, 외국인활동 내용 및 장소에 대해 몇몇 필요한 제한하였다.

6. 외국인 재 중국 취업관리 규범

먼저, 국무원 인력자원주관부서는 경제사회발전 수요와 인력자원 수요공급상황에 근거하여 마땅히 국무원관련부서와 회동하여야 하고, 외국인 재 중국 업무지도 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외국인 재 중국 업무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외국인 재중국 업무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업무허가와 업무용 외국인 거류증서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 초빙 직장은, 마땅히 초빙 외국인의 업무 허가와 업무용 외국인거류증서를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 불법취업, 외국인 불법취업 소개 및 외국인 불법초빙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정하였는데,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 제43조는 외국인이 다음 행위 중의 하나를 한 경우, 불법취업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규정에 따르지 않고 업무허가와 업무용 거류증서를 취득하여 중국 경내에서 일한 경우; (2) 업무허가 한정범위를 넘어 중국 경내에서 일을 한 경우; (3) 외국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자리범위 또는 시간을 초과하여 중국 경내에서 일을 한 경우이다. 다

시금,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업무 허가와 업무용 거류증서를 취득하여야 하고 불법취업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제41조는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마땅히 규정에 따라 업무허가와 업무용거류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단위(직장)과 개인도 업무허가와 업무용거류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초빙해서는 안 된다.

7. “3불” 인원에 대한 조사, 심사의 조치와 법률책임

먼저, 중국은 “3불”인원에 대한 조사, 심사의 권리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외국인이 “3불”의 정황이 있다고 발견하면, 마땅히 조속히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3불”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심사기관은 법에 따라 현장에서 물어보고, 계속 질문과 구류심사 등을 할 수 있다. 《출입경관리법》 제59조는 출경입경관리 위반혐의의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질문할 수 있다; 현장질문을 통하여, 다음의 정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다: (1) 불법 출입경 혐의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불법출경입경을 도운 혐의가 있는 경우; (3) 외국인이 불법거류, 불법취업 혐의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 위법 범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60조 외국인은 본법 제59조 제1관에 규정한 정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장 질문을 또는 계속 질문을 통한 후 혐의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심화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구류심사를 할 수 있다. 제61조 외국인은 다음의 정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구류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그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2) 임신 혹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스스로 수유를 하는 경우 (3) 16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인 경우; (4) 구류심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제한된 활동범위의 외국인은, 마땅히 요구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의 비준을 경유하지 않은 경우, 한정된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활동범위제한의 기한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국적, 신분이 불명한 외

국민에 대해서 활동범위제한 기한은 그 국적, 신분을 명확히 조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다음으로 “3불”문제의 처벌 정황을 규정하였고, 그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였다. 첫째, 규정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출국 송환할 수 있고, 출국송환된 지 1년에서 5년 내에는 입경이 불허된다. 제62조 외국인은 다음의 정황이 있는 경우, 출국송환 할 수 있다: (1) 기한 출경을 처분 받고, 규정기한 내에 출경하지 않은 경우; (2) 입경을 허락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경우; (3) 불법거류, 불법취업한 경우; (4) 본법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출국 송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출경 인원이 전관에 나열한 정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는, 법에 따라 출국 송환할 수 있다. 출경 송환된 인원은, 출경송환된 날부터 1년에서 5년까지 입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3불 인원의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3불”이 있는 사람에 대해, 예를 들면 위조, 변조, 편취, 도용한 타인 증서를 가지고 출경 입경하거나, 출입국 심사를 도피하는 등 위법출경입경한 경우; 비자, 정류거류증서 등 출경입경 증서를 허위 날조 편취한 경우; 외국인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외국인 진입이 제한된 구역에 진입한 경우; 외국인, 외국기관이 본법 규정에 위반하여,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기한 내 이전결정을 집행 거부한 경우; 외국인 불법거류; 외국인 불법취업; 외국인이 정류거류사유에 불합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즉시 이탈, 구류, 기한내 출경, 출국축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벌금, 위법소득몰수에 처하는데, 벌금 폭은 1천위엔에서 5만위엔이며, 구류는 5일에서 15일 등 차이가 있다. 그 외에, “3불”에 대해 돕는 행위, 예를 들면 타인의 불법 출경입경 협조; 불법입경, 불법거류의 외국인의 수용과 은닉, 불법입경, 불법거류의 외국인의 조사도피를 돕거나 또는 불법 거류의 외국인을 위해 위법 출경입경증서를 제공하는 것; 외국인 불법취업을 소개하는 등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 몰수 및 구류 등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제88조 본법규정에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현행 《형법》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 중 제3절 국(변)경관리방해죄는 국변경관리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된 죄명을 규정하였는데, 제318조 규정의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제319조 규정의 출경증서편취죄; 제320조 규정의 위조, 변조의 출입경증서 제공죄; 제321조 규정의 타인

밀입국(변)경 운송죄 및 제322조 규정의 밀입국(변)경죄를 포함한다.

제3절 《형법》의 출입경관리 방해죄 관련죄명의 적용상황

1. 입법연혁과 취지

중국의 1979년 《형법》 제176조는: “출입경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국(변)경을 몰래 넘는 경우,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년 이상 유기도형,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을 운송, 조직하여 밀입국(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년 《형법》은 국변경관리방해죄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변경관리방해의 범죄행위는 단지 밀입국(변)경죄와 타인 밀입국(변)경 운송, 조직죄의 두 개의 죄명으로 규제하며; 둘째, 이 두 개의 죄명의 법정형은 비교적 낮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9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타인 밀입국변경 운송, 조직죄의 중한 처벌에 관한 보충규정》(이하 약칭하여 《보충규정》)의 시행으로 바뀌었다. 《보충규정》은 1979년 《형법》이 규정한 밀입국(변)경죄와 타인밀입국(변)경 운송, 조직죄에 대해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서도 출입경증서 편취죄, 위조·변조의 출입국증서제공죄 및 출입경증서의 판매죄 등의 죄명을 증설하였다. 타인 밀입국(변)경 운송, 조직죄를 두 개의 죄 즉,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와 타인 밀입국(변)경 운송죄로 나누었으며, 두 개의 죄에 대해서 각각 한 개의 범행 단계를 추가하였는데, 즉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은 규정하기를, “이하의 정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도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타인 밀입국(변)경 집단의 중요한 인물조직; (2) 수 차례 타인 밀입국(변)경 또는 타인 밀입국(변)경 다수인원 조직; (3) 조직에 의해 사람이 중상, 사망에 이른 경우; (4) 조직인에 의해 인신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된 경우; (5)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조사에 항거한 경우; (6) 위법소득 액수가 거대한 경우; (7) 기타 특별한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또한 “조직인에 의해 살해, 상해, 강간, 유괴인신매

매 등 범죄행위 또는 조사인에 대해 살해, 상해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타인 밀입국(변)경 운송은 “다음의 정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다 차례 운송행위 또는 다수인원 운송 실시; (2) 사용하는 선박, 차량 등 교통수단이 필요한 안전조건을 구비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3) 위법소득액수가 거대한 경우; (4)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그리고 “타인의 밀입국(변)경 운송에서 운송인에 의해 중상, 사망 또는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조사에 항거한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운송인에 의해 살해, 상해, 강간, 유괴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 또는 조사인에 대해 살해,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보충규정》은 죄명증설로 밀입국변경범죄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이러한 죄명의 법정형을 보편적으로 상향하였다. 그 후, 1997년 《형법》 수정으로, 《보충규정》의 내용전부는 새로운 《형법》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써 현행 형법 국(변)경 관리죄에 관한 입법규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곧 이러한 죄의 입법목적에 대해 말하자면, 입법기관은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준비한 현대 국제사회에서, 밀입국(변)경 행위는 일반적으로 모두 각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며, 모두 밀입국(변)경의 행위규정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1994년 《보충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입법은 정비를 하였고, 대폭적으로 법정형을 상향시켰다. 입법기관은 이러한 중형화의 보충입법의 목적에 대해서, “최근, 복건(福建), 절강(浙江), 광둥(广东) 등 연해 연변 지구의 밀입국(밀입항)(변)경 (이하 약칭하여 밀입국(변)경)의 위법범죄활동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진출입경관리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경우, 몇몇 지방 사회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 중국의 국제 명예와 대외형상에 손해를 가하고, 몇몇 관련 국가의 화교의 정당한 권익을 위태롭게 한 경우로, 밀입국(변)경의 위법범죄활동을 엄금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위원회는 현재 밀입국(변)경의 새로운 정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반밀입국 투쟁의 실천 경험기초를 총결하면서 정치위원, 법원, 검찰원, 공안, 외교, 화교, 민족 등 관련 부문과 몇몇 지방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서, 《타인밀입국(변)경 운송, 조직 범죄와 관련한 보충규정(초안)》을 기초하였으며, 형법의 관련규정에 대

해 보충수정을 하였다.”⁵²⁾

개혁개방이전에, 밀입국변경의 행위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이로써 1979년 《형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두 개 죄명의 간단한 규정으로 규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과 관련해서도 경죄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인원의 유동이 증가함에 따라 밀입국변경 행위 실행의 기회는 많이 제공되었다. 밀입국변경범죄의 발생은 대폭 상승하는 추세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보충규정》의 등장 및 그 후의 내용이 1997년 《형법》에 전면적으로 흡수되었으며, 이러한 범죄 발생 추세에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자는 엄격한 형벌제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범죄행위의 발생을 금지하는 것이다.

2. 국(변)경관리 방해죄 관련 규정 및 적용

현행 《형법》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 중 제3절 국(변)경관리방해죄는 국변경관리방해 관련 죄명을 규정하였는데,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출입경증서 편취죄, 출입국경 증서 위조·변조죄 및 출입경증서 매매죄, 밀입국(변)경 타인 운송죄 및 밀입국(변)경죄를 포함한다.

《형법》 제318조부터 제322조 규정의 각 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중국의 출입경관리질서이며;⁵³⁾ 본죄의 주체는 모두 일반주체이다.⁵⁴⁾ 이로써, 중국인 또는 외국인인을 막론하고, 제318조부터 제322조의 각 죄 규정의 행위를 실시하기만 하면, 모두 상술의 각 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 노구치타카유키(野口孝行, 일본국적)는, 2003년 8월에 일본에서 다른 사람의 파견을 받아, 중국에 와서 두 명의 조선인을 난닝(南宁)으로 운송하여 타인에게 넘겨주었고, 그 후 타인이 두 명의 조선인을 데리고 중국 국경을 몰래 넘어 일본으로 갔으며, 50만 엔을 경비로 받았다. 동년 12월 4일, 노구치타카유키는 다시 한번 50만 엔을 경비로 받았으며, 지난번 같은 방식으로 그 외 2명을 일본으로 밀입국 협조계획을 하였으

52) 参见关于《严惩组织、运送他人偷越国(边)境犯罪的补充规定(草案)》的说明.

53) 张明楷：《刑法学》，法律出版社 2011年版，第977-981页.

54) 黎宏：《刑法学》，法律出版社 2012年版，第841-846页.

나, 10일 난닝에 도착했을 때 체포되었다. 후에 광시장족 자치구 충쭈어시(广西壮族自治区崇左市) 인민법원은 2004년 6월 타인 밀입국경 운송죄로 피고인을 유기징역 8개월을 판결하였고, 국경추방, 벌금 인민폐 2만위안을 병과하였다.⁵⁵⁾ 본 사건에서 행위인은 외국인이나, 그 행위는 《형법》 제321조 규정 타인 밀입국(변)경죄에 부합하며, 이로써 본죄의 정범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타인 밀입국(변)경 운송죄가 외국인이 구성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상 각 죄의 행위 주체가 모두 일반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 외국인 주체가 이상 각 죄의 객관행위를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이상 각 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관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6조: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범죄는, 법률이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 역시 본법을 적용한다.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곧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범죄로 보는 것이다.” 국(변)경 관리방해죄는 중국 출입경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이며, 따라서 행위 또는 결과 중 일반적으로 하나가 중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형법》 제6조의 규정의 속지관할의 원칙에 따라 모두 중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행위를 실행하거나 또는 중국 영토 외에서 행위하고 결과가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모두 《형법》 제318조에서 제3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변)경관리 방해류의 죄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서술한다:

가.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의 적용

《형법》 제318조 규정은: “타인을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아래의 정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55) 案例来源胡云腾主编:《刑法条文案例精解》, 法律出版社 2007年版, 第525页.

- ①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집단의 주요 인물 ;
- ②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수 차례 조직하거나 다수의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
- ③ 조직된 사람이 중상, 사망에 이른 경우;
- ④ 조직된 사람의 인신자유가 박탈 또는 제한 된 경우;
- ⑤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하는 경우;
- ⑥ 위법소득액수가 거액인 경우;
- ⑦ 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전관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된 사람에 대해 살해, 상해, 강간, 유괴 등 범죄행위 또는 조사인에 대해 살해, 상해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죄수병과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조 규정은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는 것을 조직한 죄이고, 그 객관행위는 출입경관리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행위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지휘하고 기획하는 것을 가리키며, 설득하고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편으로 하기 위해 서로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다.⁵⁶⁾ 최고인민법원의 2002년 1월 30일 《타인의 밀입국(변)경을 운송, 조직하는 등 형사사건 법률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해석》(이하 약칭 《해석》), 타인의 밀입국(변)경을 지휘, 기획, 지도하거나 핵심 요원의 지도하에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타인의 밀입국(변)경을 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는 타인의 밀입국(변)경 조직에 속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핵심 요원의 지도 핵심 요원의 지도하에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타인의 밀입국(변)경 행위를 소개, 유인하는 등 행위는 본죄의 “조직”에 속한다. 단지 이러한 조직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핵심 요원의 지휘 하에서이며, 만약 핵심 요원이 상술의 행위시행을 지휘하지 않았다면, ‘조직’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⁵⁷⁾ 동시에, “타인을 밀입국 변경하도록 하는 조직 범죄의 단계가 비교적 많고, 참여인원의 정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유인, 소개 등 3종 방식 이외의 기타 일반 협조행위에 대해서는, ‘조직’행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56) 张明楷：《刑法学》，法律出版社 2011年版，第977页。

57) 熊选国，任卫华主编：《刑法罪名适用指南——妨害国(边)境管理罪》，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7年版，第3页。

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일반 협조행위가 본죄의 “조직”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본죄의 정범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25조, 제27조 공동범죄의 규정에 따라 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조직된 사람이 중상, 사망을 야기한 경우”는 타인을 조직하여 밀입국(변)경 과정에서, 중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직된 자가 자해, 자살 등 중상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가중적 정황은, 마땅히 제318조 제2항 규정 “전관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된 자에 대해 살해, 상해, 강간, 유괴 등 범죄행위 또는 조사인원에 대해 살해, 상해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수죄병과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의 정황과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제318조 제2관이 규정한 것은 밀입국(변)경을 위하여 타인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기타 범죄의 정황이 있는 경우, 마땅히 수죄병과하며, 여기의 결과 가중 정황과는 본질상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고인 인시양룽(尹相龙), 황화궈(黄花根) 등 인물들은,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타인이 밀입국하도록 수 차례 조직하여, 계속해서 180여명을 절강성 해녕현(浙江省海宁县) 공해로 운송하고, 한국선박에 넘겨주어 단지 그 국가로 몰래 운반하여, 중간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 중 2001년 10월 6일, 그들은 60여명의 밀항인원을 해상에서 한국 “제7태창호”에 넘겨주었는데, 검사를 피하기 위해, 그 해상의 한국조직 및 운송인원은 밀항자를 선박 내부로 숨게 하였고, 그 중 25명이 질식 사망하였는데, 그 후 그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사건 발생 후, “제7태창호”는 한국경찰에 의해 압류되었고, 다른 밀항자들은 자국으로 송환되었다. 그 후 저장성닝파시(浙江省宁波市) 중급인민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인시양룽(尹相龙)을 유기징역 9년에 2만위엔의 벌금을 병과하였고; 황화궈(黄花根)은 유기징역 7년과 벌금 2만위엔을 병과하였다.⁵⁹⁾ 여기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은 마땅히 결과가중적 정황이나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실시한 것이다.

한국인이 만약 타인이 밀입국(변)경의 행위를 지도, 기획, 지휘하거나 주요 인물의 지휘하에, 타인이 밀입국(변)경 등 행위를 소개, 유인, 끌어들이는 경우는 타인

58) 熊选国, 任卫华主编: 《刑法罪名适用指南——妨害国(边)境管理罪》,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7年版, 第3页.

59) 案例来源胡云腾主编: 《刑法条文案例精解》, 法律出版社 2007年版, 第520页.

이 밀입국(변)경하도록 하는 조직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형법》 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죄 처벌하며; 만약 실시한 것이 이상의 행위 외에 기타 협조행위이고, 피협조자가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죄의 행위자인 경우, 곧 타인이 밀입국(변)경 하도록 조직한 죄의 정범의 공범을 구성하는 것이며, 《형법》 제318조 및 제25조(공동범죄개념), 제27조(중범)의 규정을 결합하여,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출입국 증명서류 편취죄의 적용

제319조 거짓으로 꾸민 노무수출, 무역거래 또는 기타 명목으로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류를 편취하여 타인의 밀입국(변)경 조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단위(직장)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직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본조 규정은 출입국증명서를 편취한 죄이며, 그 객관행위는 노무수출, 경제왕래 또는 기타 명의로 허위날조하고,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를 편취하는 것이며,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이다. 단위(직장)주체는 역시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인이 출입국증명서를 편취한 후, 자신이 실행하는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하는데 사용한 경우, 마땅히 그 출입국증서 편취행위를 수단행위로 보고,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행위는 목적행위로 보며, 양자간에는 건련관계(牽連关系)가 있는데, 건련범(牽連犯)은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땅히 타인이 밀입국(변)경 하도록 조직한 죄로써 정죄처벌한다.

《해석》 제3조 규정에 따라서,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하기 위해 사용, 편취한 출입국증명서 5부이상, 또는 불법 처리비용 수취 30만위엔 이상은 형법 제319조 제1관 규정의 출입국증명서 편취죄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죄주체는 단지 일반주체뿐만 아니라, 단위(직장)주체 역시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로써, 만약 한국인 및 한국의 단위(직장)주체가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하기 위하여, 출입국증명서를 편취한 경우, 출입국 증명서 편취죄의 정범을 구성한다; 만약 한국인 또는 한국 단위(직장)주체가 타인을 위하여 출입국 증명서를 편취한 행위에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역시 출입국증명서 편취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

다. 위조·변조의 출입국증명서류 제공죄의 적용

제320조 타인을 위하여 위조, 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류를 제공하거나 또는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류를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위조, 변조된 출입국증명서 제공죄의 객관적 측면에서의 표현은, 타인에게 위조, 변조된 출입국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 “제공”은, 유상 또는 무상의 제공을 포함한 공급을 가리킨다. “위조”는 출입국 증명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제작한 불법 허위증서 제작행위이며; “변조”는 진실한 출입국 증명서에 직접적으로 수정, 변환 등의 가공과 개조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석》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이하의 정황 중의 하나가 있으면, 형법 제320조 규정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타인에게 위조, 변조의 여권, 비자 등 출입국 증명서를 5부 이상 제공하거나 또는 여권, 비자 등 출입국 증명서를 5부 이상 판매한 경우; (나) 위법소득 30만위엔 이상인 경우 (다)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라. 출입국증명서류 판매죄의 적용

제320조 타인을 위하여 위조, 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류를 제공하거나 또는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류를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출입국 증명서를 판매한 객관적 측면의 표현으로는, 여권, 비자 등 출입국 증명서 판매이다. 여기서 “판매”는 즉 본인의 출입국 여권, 비자 등을 판매하는 것일 수 있으며, 타인의 출입국 증명 여권, 비자 등을 전매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판매는 반드시 국가 유권기관이 제작한 진실하고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이어야 하는 것이다. 위조, 변조된 출입국 증명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위조, 변조된 출입국 증명서 제공죄로 처벌을 논하며, 본죄로 논하지 않는다. “판매된 출입국 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⁶⁰⁾

마. 타인의 밀입국(변)경 운송죄의 적용

《형법》 제321조: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는데 운송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에 열거한 상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① 여러 차례 운송행위를 하거나 운송인원이 많은 경우;
- ② 사용한 선박, 차량 등 교통수단이 필요한 안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경우;
- ③ 위법소득 액수가 매우 큰 경우;
- ④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타인 밀입국(변)경의 운송 중에 피운송인의 중상, 사망을 초래하거나 폭력, 협박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2항의 죄를 범하고, 피운송인에 대하여 살인, 상해, 강간, 유괴하여 매매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있거나 또는 조사원에 대하여 살인, 상해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수죄의 병합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조 규정은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운송한 죄이며, 그 객관행위는 차량, 선박 등 교통 수단을 사용하여 밀입국(변)경하는 사람을 운송하거나 또는 중국

60) 熊选国, 任卫华主编: 《刑法罪名适用指南——妨害国(边)境管理罪》,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7年版, 第10页.

국(변)경 내로 운송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도보로 타인을 데리고 밀입국(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타인을 밀입국(변)경 운송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⁶¹⁾ 그러나 상술한 바처럼, 본죄의 객관행위는 차량, 선박 등 교통 수단을 사용하여 밀입국(변)경하는 사람을 운송하여 출입국(변)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도보로 데리고 가는 행위는 명확히 본죄의 “운송”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도보로 데리고 가서 밀입국(변)경하는 사람이 출입경을 하는 경우, 밀입국(변)경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⁶²⁾ 외국인이 안내 가이드를 맡은 경우, 도보로 데리고 가는 행위 역시 타인을 밀입국(변)경하는 운송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밀입국(변)경죄의 공범을 인정한다.

본죄와 《형법》 제318조 규정의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죄와는 일정한 관련이 있다. 실무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하는 조직하는 것과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운송하는 정황이다. 만약 이러한 밀입국(변)경 인원이 동일한 무리의 인원이 아니라면, 마땅히 타인을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한 죄와 타인을 밀입국(변)경하도록 운송한 죄로 수죄 병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조직과 운송이 동일한 무리의 밀입국(변)경 인원이라면, 운송행위는 조직 행위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직행위와 함께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로써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조직한 죄에 따라 정죄 처벌하는 것이다.”⁶³⁾

본죄는 행위범으로, 단지 행위인이 타인을 밀입국(변)경하도록 조직하게 되면 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인이 획득한 액수와 실행범죄의 행위 횟수 및 관련인의 밀입이 성공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⁶⁴⁾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조직한 죄의 규정과 유사하게, 제321조 제2관 역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가중적 정황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61) 何秉松主编：《刑法教科书》(下卷)，中国法制出版社，2000年版，第1071页。

62) 张明楷：《刑法学》，法律出版社，2011年版，第980页；龚培华：“妨害国(边)境犯罪司法适用研究”，载于《人民检察》2001年第11期，第31页。

63) 参见张明楷：《刑法学》，法律出版社，2011年版，第980页；黎宏：《刑法学》，法律出版社，2012年版，第844页。

64) 胡云腾主编：《刑法条文案例精解》，法律出版社，2007年版，第519页。

주의할 것은, 제321조 제2관이 규정한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운송하는 중에 피운송인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 수단이 필요한 안전조건 등을 구비하지 않는 등의 각종 원인으로, 중상, 사망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피운송인이 자상, 자살 등 중상, 사망의 엄중한 결과에 이르렀을 경우이다. 마땅히 제321조 제3관 규정의 “피운송인에 대해 살해, 상해, 강간, 유괴 등 범죄행위”의 상황과는 구별된다. 후에 하나의 정황은 타인을 밀입국(변)경하도록 운송한 과정에서 다시금 기타 범죄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수죄로 병벌해야 한다.

바. 밀입국(변)경죄의 적용

제322조 국(변)경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국(변)경을 몰래 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만약 단지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도왔다면, 그것이 실행한 본죄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본죄의 공범이 성립으로 밀입국(변)경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석》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밀입국(변)경은, 다음의 정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형법 제323조 규정의 “정황이 엄중한”에 속한다: (가) 경외에서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밀입국(변)경 3회 이상; (다) 타인을 끌어들이거나 유인하여 함께 밀입국(변)경 한 경우; (라) 밀입국(변)경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내에 다시금 밀입국(변)경을 한 경우; (마)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만약 한국인이 자기의 시도로 밀입국(변)경을 하지 않고, 타인의 밀입국(변)경을 위해 교사 또는 방조를 한 경우는 곧 비록 밀입국(변)경죄의 정범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밀입국(변)경죄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행위인의 행위가 비록 객관적으로 밀입국(변)경자의 밀입국행위의 실행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나 상술한 모든 죄의 객관적 실행행위에는 속하지만, 곧 밀입국(변)경자에 대해 조직하고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 밀입국(변)경자가 밀입국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위조, 변조한 출입국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판

매한 경우는, 곧 이상의 모든 죄의 정범에 따라 처벌하고, 밀입국(변)경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소 결

상술한 바처럼, 《형법》 제6장 사회질서관리방해죄 중 제3절 국(변)경관리방해죄가 규정한 범죄의 주체는 모두 일반주체이며, 이로써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막론하고, 모두 이상 각 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국인이 이상의 각 죄의 객관적 실행행위를 실시한 경우, 마땅히 각 죄의 법률규정에 따라 정죄 처벌한다. 이외에, 만약 한국인이 이상의 각 죄의 객관적 실행행위를 실시하지 않고, 실행행위의 정범에 대해 교사, 방조한 경우는 여전히 중국 《형법》 관련 공동범죄의 규정에 따라, 이상 각 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이 범한 죄명에 맞추어 정죄, 처벌한다. 이외에, 이러한 종류의 죄의 보호법익은 중국의 출입경 관리질서이기 때문에, 이상 모든 죄의 객관적 행위를 실행하고, 중국의 출입경관리질서에 대해 침해가 성립하면, 곧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실시한 행위가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리고 그 몰래넘는 자가 밀입경이든 밀출국이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 합법적 입경하여 바꾸어 제3국으로 몰래 넘어가든, 모두 이러한 종류의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경관리법》 입법전망

2004년 12월부터公安부는 “출입경관리법 입법업무 전담조직팀”을 구성하여, 출입경 관리입법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6년까지 이미 10번의 초안을 완성하여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하였고, 여러 방면의 수 차례의 조사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경관리법》이 3차의 심의 후에 반포되었다. 이법은 입법을 통일하고 관리와 서비스를 동시에 중시하는 원칙을 구현하며, “3불”인원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리부문의 공동 정보

플랫폼과 지문 등 인체생물기술제도의 좋은 점을 채택하는 이외에도 그 입법활동 자체는 역시 아주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이 법의 과학화와 민주화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사회발전규율을 존중하고, 상응한 객관적 정황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법은 중국의 현실 수요에 기반하고 있고, 중국의 구체적 국정에서 출발하며, 국외입법 및 그 실무의 유익한 경험을 거울삼아 성숙한 입법경험 및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이를 촉진시키며 국가의 주권, 안전, 이익 및 출입경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출입경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입법의 민주화의 표현에서 두드러진 것은 첫째, 이 법은 전문위원회가 초안을 잡고, 법률위원회가 통일적 심사를 하여, 입법민주의 제도화, 규범화는 효과적인 실천을 하게 되었다; 둘째, 이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3차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발표와 토론 및 협상이 있었으며; 셋째, 입법과정은 다방면의 의견수렴과 수 차례의 좌담회 및 심의회, 공청회 등 여러 형식으로 넓게 각 방면의 소리를 청취하고, 법률규범의 내용을 최대한 민의에 부합하게 반영하였다; 넷째, 입법내용은 충분히 민주성을 구현하였으며, 이법은 국민의 출입경 이익을 최종 목적 중의 하나로 하여, 국민의 출입경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내용 및 입법활동 그 자체의 중대한 발전은 정부관리, 행정관념의 근본적 전환에서 나온다. 정부 스스로가 정한 개혁은 종래 출입경관리에서 강력한 공권력, 사권의 축소, 과도한 제약, 적은 보장, 과도하게 엄한 관리, 업무상 공석이 있는 양상을 바꾸어 출입경권이 하나의 기본 인권이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이 특정의 역사적 산물로서 철저하게 완벽하지는 않으며, 그 내용이 개선을 기대할 점이 분명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때로는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며, 때로는 교섭협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혹은 고의적 행위가 법률의 필요한 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실무 및 미래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노력할 필요

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1. 법률의 실무상 입법의 세분화와 운영적 해석필요

중국 국정의 복잡성과 불균형성으로 인해, 입법기관은 법률에서 항상 원칙성을 사용함에 치중되어 있고, 추상적 규정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규정을 대체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항상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 또는 규장 내지는 사법해석 규정에 남겨두었으며, 법률의 실무는 적용자가 운영상의 해석을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제7조 규정은 국무원 비준을 거쳐公安부, 외교부는 출경입경관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출경입경인원의 지문 등에 대한 인체생물식별정보를 남기는 규정을 만들고; 제10조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 지구의 통행증서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며; 제16조 규정은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 등 비자발급 범위와 비자발급 방법은 외교부가 규정하는데, 보통비자의 종류와 발급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1조규정은 외국인이 중국경내의 업무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등이다. 동시에 이법은 역시 예컨대 “법률, 행정법규규정,,,,,의 기타 정황”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조문형식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이러한 비교적 큰 해석 공간의 규정은 법률 적용자에게 운용상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2. 출입경권리의 구제강화 필요

현재 중국은 출입경권보장상 역시 비교적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며, 출입경권의 구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전체 《중화인민공화국출경입경관리법》을 살펴보면, 단지 64조가 행정심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외국인이 본법규정에 따라 그 실시한 지속적 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출경조치불복송환은 법에 따라 행정심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행정심의결정이 최종결정이 된다. 기타 경외인이 본법규정에 따라 그 실시된 출경송환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전

조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상황에 대한 구절은 한 마디도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관리법》의 구제경로 설계는 전체적인 결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제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것이며, 이법의 이러한 결점은 관련 출입경관리 권리가 진정한 존중과 보장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행정심의회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심의 전치원칙을 관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중국은 출입경관의 보장상 마땅히 국제기준에 맞추고, 참고하여야 하며, 출입경관의 제한은 “허가성”의 국제최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출입경관의 구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출입경관리 가운데 본국으로의 귀국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추방시 받아들여질 권리, 국내구제 연구시 국제구제권 등 권리를 모색은 매우 커다란 발전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3. 출입경관리기구와 체제에 대한 입법적 개혁

가. 전문적인 출입국관리기관 설립과 중앙직권의 수직적 관리 실행

출입국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출입국관리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관리의 어려움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실무 중 여러 방면의 법집행, 지역장벽, 부문장벽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출입국관리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통일적이고 고효율적 출입경관리기구가 절박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로 집약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과 일치되는 출입국관리 체제를 설립해야 하는데, 곧 국무원 직속의 국가출입경관리 총국이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출입국관리기관의 설립, 직권범위, 인원 배치, 경비보장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밖에, 역사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출입국 관리체제는 항상 지방 분권이 있었다. 여권접수, 심사비준, 항구 비자의 심사발급, 외국인거류, 여행의 관리 등과 같은 부분은 지방이 행사한다.

중국의 이러한 출입국관리체제와 출입국관리권의 중앙직권적 성격과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규정에 따라, 대외적인 사무는 중앙인민정

부만이 행할 수 있는 중앙직권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실행하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중앙직권의 수직적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출입경 관리 업무의 성격을 결정하고 실행가능성 역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은 이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경검사체제의 직업화 개혁

현재, 중국의 출입국관리는 두 가지의 체제가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31개의 성, 시, 자치구에 분포된 200여개의 출입경 검문소는公安부 출입국 관리국 관할에 소속되어 있고, 현직公安의 출입국 국경부대의 지도하에 있는데, 1998년부터 시작된 인민경찰직업화개혁에서 9개도시⁶⁵⁾의 출입국심사체제기관은公安부 편제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중국 특유의 '일국양제 (一国两制)' 심지어 '일성양제 (一省两制)'를 형성하여 독창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체제의 차이는 행정의 법집행과 국민의 출입국 권리행사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 주고 있어, 출입국 관리체제의 통일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9개의 출입국관리 종합검문소 직업화가 시행된 이래,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종합검문소 사무실의 전문화, 직업화 등 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안전유지의 목적을 비교적 양호하게 실현하였는 바, 출입경관리의 직업화개혁은 필수적이고 실현가능한 경로라고 할 것이다.

4. 출입경관리법의 점진적인 이민관리법으로의 전환

근 20년 간 세계 각 국의 출입국관리의 발전의 정황을 전면적으로 살펴보면, 출입국관리가 비교적 완벽한 국가는 점진적으로 관리의 핵심을 출입경관리에서 이민관리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조정대상이 겹치고, 모두 공법이며, 절차법에 편중되어 있지만, 양자는 목적, 내용, 제정 시에 고려된 요소 및 조정수단이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민법은 발전을

65) 警察职业化改革的九个城市包括北京, 天津, 上海, 广州, 珠海, 深圳, 汕头, 海口, 厦门.

촉진시키고, 융합을 증진하며, 국가이익 유지와 인권보호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국국내 문제와 이민과 관련된 각각 단계별 문제를 힘써 해결하는데, 그 제정 시에 국가안전과 국제적 왕래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인도주의, 경제이성과 인력자원 등의 요소를 살피며, 이민법은 행정수단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수단과 기술수단을 넓게 활용하여 간접적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다.⁶⁶⁾ 그리하여 출입국관리법은 국가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출입경관리를 보장하며,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출입국의 조건, 심사비준, 조사와 벌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안전과 국제적 왕래의 요소는 그 제정 시에 편중된 고려 요소였으며, 그 주요 직접적 관리수단은 행정수단이었다. 명확히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하여 비교적 이민법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더욱 전면적이며 그 배후의 이념이 더욱 과학적, 문명적, 선진적이며 더욱 이 영역의 입법의 추세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원의 월국 유동을 규범화하는 법률과 관리체계의 역사적 발전증명은,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발전에 따라, 인원의 월국 유동을 규범화하는 법률은 출입경관리법에서부터 이민법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것이다.⁶⁷⁾ 그 중 전통적 이민국가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일찍이 이민법을 제정하였고, 비전통적 이민국가 역시 점차적으로 이민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법 또는 출입경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출입경관리법 입법은 마땅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황과 시세를 살펴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 출입경관리법률의 정비는 일취월장적으로 발전은 아니지만,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전지구화(글로벌화) 배경의 관점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점진적 심화와 사회의 전면적 발전의 진보에 따라, 중국의 출입경관리법 입법은 중국 문화전통을 버릴 필요가 있으며, 국외의 선진문명의 성과를 폭 넓게 수용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문명적이며 선진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66) 刘国福等著:《移民法》, 中国经济出版社 2010年版, 第45—46页.

67) 刘国福:《移民法—出入境权研究》, 中国经济出版社 2006年版, 第66页.

제4장 결론

제1절 주요논점의 정리

2012년 6월 중국 출입경관리법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는 중국이 중국내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한 한국인들에게는 대체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구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정책적 관심과 연구를 요한다. 특히 중국 동북 3성, 북한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제재는 정책적 관심대상이다. 따라서 재중 한국인들의 보호, 탈북자지원활동에 따른 한중간의 외교적 문제, 중국내 구금된 한국인의 보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 영향도 날로 심각해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유지와 관련한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밀출입국관련 범죄가 집단적이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는 출입국관리제도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치안과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이른바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며, 외국인의 체류·거주와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1. 북한주민의 밀출입국 문제

현재 중국에 밀입국한 외국인중 가장 많은 수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약 30만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밀입국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내몽골지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을 한국이나 일본 등 국가로 밀입국하는 도중이전국으로 삼는 있는데,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국제적·민족적 관계 등 원인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중국을 비판하는 구실로 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외국공관에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사건에서는 국제적 마찰의 여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 출입국관리 위반범죄의 증가추세

중국에 있어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현재 규모나 양으로 볼 때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 영향도 날로 심각해져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는 가족성, 조직성, 지역성, 국제성, 전문성 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발, 검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3.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대책

이른바 중국내 “3불” 외국인의 문제 자체도 날로 심각해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입경 또는 불법체류한 후 절도, 강도, 마약매

매, 살인, 부녀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매매, 집단사기 등 범죄사건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2년 개정 출입경관리법은 “3불”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첫째,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 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거주허가서류의 관리·검사 및 숙박등록에 관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셋째,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넷째,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최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과 관련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불법출입국 외국인범죄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는 유의할 부분이다. 한편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개혁에 있어서 국제기준에 상응한 개선노력은 긍정적 측면으로 판단된다.

불법출입국과 체류외국인 규제강화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과 사회질서 유지의 필요성으로부터 나온 만큼 중국내 체류 국민의 활동과 중국내 한국국민의 보호를 책임진 관계당국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하여 중국이 출입경권의 보장상 국제기준에 상응하여 본국으로의 귀국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추방시 받아들여질 권리 등을 모색함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1. 불법출입국 외국인관련 조치의 규범화 및 처벌강화

2012년 이전 중국 출경입경관리법제에서는 불법출입국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2012년 개정법 제71조에서 이를 명시하였다. 즉 위조·변조하거나 편취한 출경입경증명서를 사용하여 출경·입경하거나 타인의 출경입경증명서를 사용하여 출경·입경하거나 또는 변방검사를 도피하여 출경·입경하

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불법출경·불법입경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개정법상 불법출경입경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에는 즉시심문(當場審問),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강제송환 등이 있다. 특히 불법출입경혐의가 있는 자 또는 불법출입경을 협조하는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속심문을 할 수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구류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사건이 복잡한 경우 6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의 구류심사기한은 그 국적이나 신분이 밝혀진 날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출경 명령을 받았으나 지정한 기한내에 출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경을 불허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강제송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송환의 조치를 받은 외국인은 강제송환을 받은 그날부터 1년 내지 5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다.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 출국을 지원하는 한국국민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개정 출경입경관리법은 불법출입경자에 대해 협조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타인을 협조하여 불법출입경한 자에 대하여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제72조)

또한 불법입경한 외국인을 수용, 은폐한 자 또는 불법입경한 외국인을 협조하여 검사를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제79조)

그리고 불법출입경 등 본 법의 위반행위가 정상이 엄중하면公安부는 경외출출에 처할 수 있고 경외출출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그 처벌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다. (제81조)

2. 불법체류 외국인관련 조치의 규범화 및 처벌강화

2012년 개정법상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에는 즉시심문(當場審

間),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강제송환 등이 있다. 출경입경관리법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당장심문을 할 수 있고 불법체류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속심문을 할 수 있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경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당장심문과 계속심문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구류심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출경입경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경고의 처벌을 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 불법체류 1일당 5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78조) 또한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수용, 은폐한 자 또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협조하여 검사를 도피하게 한 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출경증명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제79조) 불법체류 등 본 법의 위반행위가 정상이 엄중하면公安부는 경외추출에 처할 수 있고 경외추출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그 처벌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중국에 입경할 수 없다. (제81조)

3. 불법출입국방조행위의 형법상의 처벌

가. 타인 밀입국(변)경 조직죄

타인을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집단의 주요 인물,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수 차례 조직하거나 다수의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도록 조직한 경우,조직된 사람이 중상, 사망에 이른 경우, 조직된 사람의 인신자유가 박탈 또는 제한 된 경우,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하는 경우, 위법소득액수가 거액인 경우,기타 특별히 심각한 정황이 있는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형법 제318조)

중국내 한국국민이 북한이탈주민 밀입국(변)경의 행위를 지도, 기획, 지휘하거

나 주요 인물의 지휘하에, 타인이 밀입국(변)경 등 행위를 소개, 유인, 끌어들이는 경우는 타인이 밀입국(변)경하도록 하는 조직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나. 타인의 밀입국(변)경 운송죄

타인이 밀입국(변)경을 하는데 운송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여러 차례 운송행위를 하거나 운송인원이 많은 경우, 사용한 선박, 차량 등 교통수단이 필요한 안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소득 액수가 매우 큰 경우,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321조)

다. 밀입국(변)경 방조죄

제국(변)경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국(변)경을 몰래 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322조) 단지 타인을 밀입국(변)경 하도록 도왔다면, 그것이 실행한 본죄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본죄의 공범이 성립으로 밀입국(변)경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중국내 한국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밀입국(변)경을 위해 교사 또는 방조를 한 경우는 곧 비록 밀입국(변)경죄의 정범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밀입국(변)경죄의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행위인의 행위가 비록 객관적으로 밀입국(변)경자의 밀입국행위의 실행에 도움이 된다면, 밀입국(변)경자에 대해 조직하고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밀입국(변)경자가 밀입국의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위조, 변조한 출입국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판매한 경우는, 해당 범죄의 정범에 따라 처벌하고, 밀입국(변)경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신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2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보도자료(2012년 5월 14일)
- 산업은행, 중국 동북진흥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동북아경제이슈, 2006
- 신호윤, 동북3성진흥전략과 한·동북3성 경제협력방안, 산업은행조사연구, 2008년 2월
- 郭建新, 在滬外國人“三非”案件的發展趨勢與世博後的防控對策, 上海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2010
- 邱 美, 廣東外國人“三非”問題管理研究, 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熊彪, 任卫华主编: 《刑法罪名适用指南——妨害国(边)境管理罪》 2007
- 王麗娜, 全球化趨勢下中國反偷越問題研究, 碩士學位論文, 武漢大學, 2005 劉建國, 懲治與豫防偷越國(邊)境犯罪研究, 河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 张明, 刑法学, 2011
- 黎宏, 刑法学, 2012
- 案例来源胡云腾主编, 刑法条文案例精解, 2007
- 刘国福等, 移民法, 2010
- 龚培华, 妨害国(边)境犯罪司法适用研究”, 载于《人民检察》, 2001
- 全曉書, 近5個月查獲偷渡人員5000多, 人民日報, 海外版, 2004, 3, 25.
- 趙泉河, 趙桂民, 中國非法移民問題刑事法律對策研究, 經濟研究導刊, 2009
- 陳哈菁, 謝天長, 偷渡問題的社會學分析, 福建省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2005
- 何秉松主編, 刑法教科書, 2000
- 黃潤龍, 中國的非法移民問題, 人口與經濟, 2001年 1月 30日
- 黃碧峰, 論我國偷渡犯罪刑事立法的完善, 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Abstract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Chines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y

Kim, Han-Kyun · Kim, Chang-Jun · Chung, Geun-Nam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urrent reforms of the Chines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system, and in particular regulations and criminal sanctions on the illegal immigration and its related crimes and violations.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is the case of Korean nationals who works for around 300,000 of North Korean illegal immigrants in the east-northern region of China, and arrested by Chinese authorities. Such activists who support North Koreans have been punished by the crimes of aid and abet illegal entry and departure, but recently there are policy-change by way of punishing as the crimes of national security.

The newly amended Chinese Immigration Control Law in 2012 expands its application and increase the level of penalty on the crimes by illegal immigrants and workers in China.

The aim of this study is, thus, to survey the recent trends in the law and policy of immigration control and its related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o propose some measures to protect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authorities.

부록: 2012년 개정 중국 출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관리를 규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대외거래와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공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와 거류 관리, 그리고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중국공민의 합법적 출입국 권익을 보장한다.

중국 경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경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해치고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公安部, 外交部는 각 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기타 외국주재기구(이하 외국주재 사증발급기관이라 함)는 경외의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를 책임지고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그 출입국관리기구는 외

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를 실시한다.

공안부, 외교부는 각 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거류 신청수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중에서 업무조율을 보강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자의 직책 분담에 따라 법에 의해 그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진다.

제5조 국가는 통일적인 출입국관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관 관리부서 간의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제6조 국가는 대외개방 출입국항에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을 설립한다.

중국국민, 외국인 및 교통운송수단은 대외개방 출입국항을 통하여 출입국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에서 비준한 곳에서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운송수단은 마땅히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항 한정지역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안전과 출입국관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의 휴대물품에 대하여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 시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의 적재화물에 대하여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해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국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얻고 출입국 인원의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를 남기는 데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외국정부에서 중국국민의 사증발급,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국정부는 상황에 비추어 상응하는 대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출입국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와 관리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며, 효율적이고 편의

하고 안전하고 간편한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중국공민의 출입국

제9조 중국공민이 출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여권 또는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공민이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방문국가의 사증 또는 기타 입국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정부와 기타 국가정부 간에 상호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공안부, 외교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국공민이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거나 외국의 선박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선원 신분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중국공민이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사이에서 왕래하거나, 또는 중국공민이 대륙과 대만지역 사이에서 왕래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따라 통행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 중국공민이 출입국을 할 때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 등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경우에만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여건을 구비한 출입국항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중국공민의 출입국에 특별통로 등의 편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국공민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한다.

- (1)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경우
- (2) 징역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 피의자에 속하는 경우

- (3) 미결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으로부터 출국을 금지당한 경우
- (4) 국(변)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출국, 불법거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송환되어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 (5)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한 경우
- (6)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국외에 정착한 중국공민이 귀국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에서 위임한 기타 외국주재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또는 그 본인이나 국내 친지를 통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민사무부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14조 국외에 정착하는 중국공민이 중국 경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전신, 사회보험, 재산등기 등 사무를 처리하는 데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의 출입국

제1절 사 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외국주재 사증발급기관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일반사증으로 구분한다.

외교, 공무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교, 공무사증을 발급하며, 신분이 특별하여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우사증을 발급한다.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한다.

업무에 종사하거나 학습, 친지방문, 관광, 비즈니스 활동, 인재유치 등의 비 외

교, 공무사유로 인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종류의 일반사증을 발급한다. 일반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7조 사증 기재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입국 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간, 발급일자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제18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 시에는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그리고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속을 처리하고 면회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때 중국 경내의 단위나 개인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초청장 발급단위나 개인은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 인도적 사유로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입국초청을 받고 긴급 비즈니스, 공사 응급수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긴급입국 사유가 있으며 출입국항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데 동의한 유관 주관부서의 증명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입국사증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항에서公安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하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라 함)에 도착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하는 여행사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단체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신청한 출입국항으로 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하며, 사증에 명기한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거부한다.

- (1)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국외로 송환되어 아직도 입국금지 기간 내인 경우
- (2) 엄중한 정신상 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타 전염병이 있는 경우
- (3)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경우
- (4) 사증을 신청할 때 허위를 날조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 체류기간의 소요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5) 사증발급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6) 사증발급기관이 사증발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증발급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면제할 수 있다.

- (1) 중국정부와 기타 국가정부 간에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면 사증 면제대상에 속하는 경우
- (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 (3) 환승 탑승권을 소지하고 국제여행 항공기, 선박, 기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과하여 제3국이나 지역에 가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출입국항도 떠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 구역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규정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 (4) 국무원이 사증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임시 입국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외국 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항구 소재도시에 상륙하는 경우

- (2) 이 법 제2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인원이 항구를 떠나야 하는 경우
- (3) 불가항력이나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임시입국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입국 수속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그가 입국 시에 이용한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출입국

제24조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사증 또는 기타 입국허가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후에야 입국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한다.

- (1)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 도피하는 경우
- (2) 이 법 제21조 제1항 (1)호부터 (4)호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 (3) 입국 후 그가 소지한 사증종류와 어긋나는 활동에 종사할 염려가 있는 경우
-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입국 금지를 규정한 기타 상황.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입국을 거부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귀환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귀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조치를 취하여 귀환시킨다. 외국인은 귀환 대기기간에 한정구역을 떠날 수 없다.

제27조 외국인은 출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등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경우에만 출국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한다.

- (1) 형사처분을 받아 아직도 집행 중이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 범죄용의자에 속하는 경우. 다만 중국과 외국 간에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형사판결을 받은 자를 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미결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3)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체불하여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거류

제1절 체류와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의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사증 소지자는 사증과 그에 기재된 체류기간 내에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7일 전에 체류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충분하고 합리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사증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사증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외국인이 지닌 사증에 입국 후 거류증명서 수속을 해야 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거류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그리고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 정보를 남겨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를 실시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와 기간의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의 취업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단 90일, 최장 5년이며, 비취업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이다.

제3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거류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

- (1) 소지한 사증종류가 외국인 거류증명서 발급상황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 중에 거짓사실을 날조한 경우
- (3)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4)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5) 사증발급기관이 외국인의 거류증명서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특수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적 등의 사유로 인해 체류를 거류로 변경하여야 하는 외국인은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류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하고 충분한 경우 거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거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거류증명서의 등기항목에는 소지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자, 거류 사유, 거류기간, 발급일자와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거류증명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 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때 항구 소재도시를 떠나야 하거나 또는 외국인 체류증명서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 체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제35조 외국인이 입국한 후 그가 소지한 일반사증,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 또는 보완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일반사증 연장, 교체 또는 보완발급 거부,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발급거부, 거류기간 연장거부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37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를 할 때에는 체류 또는 거류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규정한 체류 또는 거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8조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에는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외국인 체류, 거류증명서를 휴대하여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 여관에서 숙박하는 경우 여관은 여관업 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숙박등기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의 숙박등기 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여관 밖의 기타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에는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또는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가 거주지 공안기관에 가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0조 중국 경내에서 출생한 외국영아는 그 부모 또는 대리인이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감호인 또는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하고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비자를 취득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서, 외국전문가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수요와 인력자원 수급상황에 비추어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무원 교육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외국 유학생의 고학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외국 유학생의 고학 일자리범위와 기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3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법 취업에 속한다.

- (1)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 (2) 취업허가 한정범위를 벗어나서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 (3) 외국 유학생이 고학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한 일자리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서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제44조 국가안전, 공공안전 유지의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외국기구가 일부지역에 거주 또는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며, 이미 설립한 경우에는 기한부 철거하게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 외국인은 외국인을 제한하는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제45조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단위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거류, 불법취업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서 지체 없이 소재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난민의 지위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에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 거류할 수 있다.

제2절 영주거류

제47조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하거나 기타 중국 경내 영주거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고 공안부의 비준을 받아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경내 영주거류 심사비준 관리방법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48조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 거류증명서를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고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주 거류증명서를 소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제49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부는 그 중국 경내의 영주거류 자격을 취소한다.

- (1)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 (2) 강제퇴거를 당한 경우
- (3) 허위를 날조하여 중국 경내에서의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4)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시간이 규정한 기한에 미달한 경우
- (5) 중국 경내에서의 영주거류가 부적합한 기타 상황.

제5장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변방검사

제50조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착 시에는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변방검사는 제일 먼저 도착한 출입국항에서 실시하며, 교통운송수단의 출국 변방검사는 맨 마지막에 떠나는 출입국항에서 실시한다.

출국 교통운송수단은 출국검사를 받은 후부터 출국하기 전까지, 입국 교통운송수단은 입국 후부터 입국검사를 받기 전에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이 규정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과 하선, 화물과 물품의 적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입국, 출국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항 도착과 떠나는 시간, 체류장소를 보고하고 직원, 여객, 화물 또는 물품 등 정보를 여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변방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조사처분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국 교통운송수단에 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운 경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그 귀환을 책임져야 한다.

제53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에 대하여 감호를 실시한다.

- (1) 출국 교통운송수단은 출국 변방검사를 시작한 후부터 출국 전까지, 또는 입국 교통운송수단은 입국 후부터 입국 변방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 (2) 외국선박이 중국 내 하류에서 항행하는 기간
- (3) 감호를 실시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4조 물품적재, 유지보수작업, 견학방문 등 사유로 인해 외국선박의 승선과 하선이 필요한 인원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승선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선박과 외국선박 또는 외국선박 간에 합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이나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선박 연결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 중국 경내에 있는 외국선박, 항공기는 규정 노선과 항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출입국 선박, 항공기는 대외개방 출입국항 그 밖의 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 불가예측 긴급 상황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근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또는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감호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국을 금지하며, 이미 출입국항에 진입한 경우에는 되돌아가도록 명령한다.

- (1) 출입국항을 떠나거나 도착 시 검사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을 한 경우
- (2) 비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항을 변경한 경우
- (3) 출입국이 금지된 인원을 태운 용의가 있어 검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국가안전, 이익 또는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물품을 적재한 용의가 있어 검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관리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전 항에 열거한 상황이 없어진 후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관련 교통운송수단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제57조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에 종사하는 인원은 소속업체에서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장 조사 및 송환

제58조 이 장에서 규정한 당장신문(訊問), 계속신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출국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公安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9조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용의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당장 신문을 거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계속 신문할 수 있다.

- (1) 불법 출입국 용의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협조한 용의가 있는 경우
- (3) 외국인이 불법거류, 불법취업 용의가 있는 경우
- (4)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한 용의가 있는 경우.

당장 신문과 계속 신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公安기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를 위반한 용의가 있는 인원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외국인이 이 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고 당장 신문 또는 계속 신문을 거처도 여전히 용의를 제거할 수 없어 진일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류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구류심사결정서를 발급하고 24시간 내에 신문하여야 한다. 구류심사가 부적정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류심사를 해제하여야 한다.

구류심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상급 지방 인민 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 기간은 그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61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구류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 엄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 (2) 임신하거나 만 1세 미만의 자기 영아를 수유하는 경우
- (3)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70세인 경우
- (4) 구류심사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요구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의 비준이 없이는 한정 구역을 떠날 수 없다.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기한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적,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활동범위 제한기간은 그 국적, 신원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62조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시킨다.

- (1) 출국제한 처벌을 받고도 규정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입국금지 사정이 있는 경우

(3) 불법 서류, 불법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외인원이 전 항에서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송환시킬 수 있다.

피송환자는 송환된 날로부터 1~5년 내에 입국이 금지된다.

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송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인원은 구류소나 송환 장소에 구류하여야 한다.

제64조 외국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실시한 계속 신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재심의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된다.

기타 경외인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실시한 송환조치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행정재심의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 법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하는 인원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국, 입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결정기관은 지체 없이 출국, 입국 금지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국가안전과 출입국 관리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내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신검사는 검사대상과 같은 성별의 2명 변방 검사요원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67조 사증,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당하거나 또는 발급 후 증명서 소지자가 발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출입국 증명서를 폐지시킬 수 있다.

위조, 변조, 사취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지를 선고한 출입국증명서는

무효하다.

공안기관은 전 항에서 규정하였거나 또는 타인이 도용한 출입국증명서를 말소 하거나 몰수한다.

제68조 공안기관은 타인의 불법 출입국 조직, 운송, 협조에 사용된 교통운송수단, 사건의 심의 증거로 되는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사출한 금지물품,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문건, 자료, 그리고 출입국 관리 위반활동에 사용한 수단 등을 압류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 출입국증명서의 진위는 증명서 발급기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또는 공안 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인정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70조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이외에 이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결정한다. 그중 경고 또는 5,000위안 이하의 처벌은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고 출입국을 한 경우
- (2) 타인의 출입국증명서를 도용하여 출입국을 한 경우
- (3) 출입국 변방검사를 도피한 경우
- (4) 기타 방식으로 불법 출입국한 경우.

제72조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협조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3조 허위를 날조하여 사증,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한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벌금을 부과하며, 동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에게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한 경우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그가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그가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며, 이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5조 중국국민이 출국 후 불법으로 기타 국가나 지역에 진입하여 송환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국증명서를 몰수하여야 하며, 출입국증명서 발급기관은 그가 송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지 3년 이내에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며, 동시에 2,000위안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국증명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2) 외국인이 거류증명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3)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출생등기, 사망신고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외국인 거류증명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 (5)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국증명서를 도용한 경우
- (6) 이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관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숙박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외국인 숙박등기 정보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외국인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에 진입한 경우 지체 없이 떠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문자기록, 시청자료, 전자데이터 및 기타 물품은 몰수하거나 소각하며, 그에 사용한 수단은 몰수한다.

외국인, 외국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기한부 철거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강제 철거시키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해당 책임인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78조 불법거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불법거류일에 따라 매일 500위안, 총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이 있는 자가 감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만 16세 미만의 외국인의 불법거류를 초래한 경우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을 지는 자

에게 경고를 주며, 동시에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9조 불법 입국, 불법거류 외국인을 수용하거나 은닉한 경우, 불법입국, 불법거류 외국인의 검사 도피를 협조하였거나 또는 법을 어기고 불법거류 외국인에게 출입국증명서를 제공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단위에 전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이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전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0조 외국인이 불법 취업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소개한 경우 개인에게는 소개한 인수에 따라 일인당 5,000위안, 총액이 50,000위안 미만인 벌금을 부과하며, 단위에 대해서는 소개한 인수에 따라 일인당 5,000위안, 총액이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경우 그 채용 인수에 따라 일인당 10,000위안, 총액이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81조 외국인이 체류 또는 거류 사유에 어긋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기타의 중국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의 계속 체류 또는 거류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부 출국시킬 수 있다.

외국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심각하나 범죄 구성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公安부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公安부의 처벌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로 추방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다시 입국하지 못한다.

제8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출입국항 한정구역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2) 외국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임시 입국수속을 하지 않고 상륙한 경우
- (3) 등선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선박을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전 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시에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제83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검사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을 하거나 또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출입국항을 변경한 경우
- (2) 규정에 따라 직원, 여객, 화물 또는 물품 등의 정보를 여실하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 협조를 거부한 경우
- (3) 출입국 변방검사 규정을 어기고 승무원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화물 또는 물품을 적재한 경우.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에 출입국이 금지된 인원을 태우고 출입국을 한 경우 그 탑승 인수에 따라 일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이미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중국 또는 외국선박이 허가 없이 제멋대로 외국선박에 댄 경우

- (2) 외국선박, 항공기가 중국 경내에서 규정한 노선, 항로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출입국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개방 출입국항 그 밖의 지역에 진입한 경우.

제85조 출입국 관리직책을 수행하는 업무직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사증, 외국인의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의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2)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이나 교통운송수단을 심사하지 않고 그 출입국을 통과시킨 경우
- (3) 출입국 관리업무 중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 (4) 규정에 따라 의법 수취한 비용, 몰수한 벌금 및 몰수한 불법소득, 불법재물을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
- (5) 벌금이나 몰수, 압류한 벌금이나 수취한 비용을 착복, 점용, 유용한 경우
-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법에 따라 법정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86조 출입국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당장에서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87조 출입국 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된 은행에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소재지에 고정주소가 없고 당장에서 벌금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집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출입국항에서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장에서 수취할 수 있다.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 칙

제89조 이 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출국이란 중국 내륙에서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 가거나, 중국 내륙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거나 중국 대륙에서 대만지역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

입국이란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중국 내륙에 진입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륙에 진입하거나 또는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에 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인이란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제90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근 국가와 접양한 성, 자치구는 중국이 유관 국가와 체결한 변경관리협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하여 양국 변경 인접지역의 거주민의 왕래를 규정할 수 있다.

제91조 외국의 중국주재 외교대표기구, 영사기구 구성원 및 특권과 면허를 향유하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나 거류 관리에 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92조 외국인이 사증 또는 외국인의 체류나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증명서 연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 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2012년 6월 30일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七次会议通过)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出境入境管理, 维护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 安全和社会秩序, 促进对外交往和对外开放, 制定本法.

第二条 中国公民出境入境, 外国人入境出境, 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管理, 以及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的边防检查, 适用本法.

第三条 国家保护中国公民出境入境合法权益.

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在中国境内的外国人应当遵守中国法律, 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 损害社会公共利益, 破坏社会公共秩序.

第四条 公安部, 外交部按照各自职责负责有关出境入境事务的管理.

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 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以下称驻外签证机关)负责在境外签发外国人入境签证. 出入境边防检查机关负责实施出境入境边防检查.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及其出入境管理机构负责外国人停留居留管理.

公安部, 外交部可以在各自职责范围内委托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受理外国人入境, 停留居留申请.

公安部, 外交部在出境入境事务管理中, 应当加强沟通配合, 并与国务院有关部门密切合作, 按照各自职责分工, 依法行使职权, 承担责任.

第五条 国家建立统一的出境入境管理信息平台, 实现有关管理部门信息共享.

第六条 国家在对外开放的口岸设立出入境边防检查机关.

中国公民, 外国人以及交通运输工具应当从对外开放的口岸出境入境, 特殊情况下,

可以从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的地点出境入境。出境入境人员和交通运输工具应当接受出境入境边防检查。

出入境边防检查机关负责对口岸限定区域实施管理。根据维护国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人员携带的物品实施边防检查。必要时，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的货物实施边防检查，但是应当通知海关。

第七条 经国务院批准，公安部，外交部根据出境入境管理的需要，可以对留存出境入境人员的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作出规定。

外国政府对中国公民签发签证，出境入境管理有特别规定的，中国政府可以根据情况采取相应的对等措施。

第八条 履行出境入境管理职责的部门和机构应当切实采取措施，不断提升服务和管理水平，公正执法，便民高效，维护安全，便捷的出境入境秩序。

第二章 中国公民出境入境

第九条 中国公民出境入境，应当依法申请办理护照或者其他旅行证件。

中国公民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还需要取得前往国签证或者其他入境许可证明。但是，中国政府与其他国家政府签订互免签证协议或者公安部，外交部另有规定的除外。

中国公民以海员身份出境入境和在国外船舶上从事工作的，应当依法申请办理海员证。

第十条 中国公民往来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中国公民往来大陆与台湾地区，应当依法申请办理通行证件，并遵守本法有关规定。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一条 中国公民出境入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旅行证件等出境入境证件，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出境入境。

具备条件的口岸，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为中国公民出境入境提供专用通道等便

利措施.

第十二条 中国公民有下列情形之一的, 不准出境:

- (一) 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或者拒绝, 逃避接受边防检查的;
- (二) 被判处刑罚尚未执行完毕或者属于刑事案件被告人, 犯罪嫌疑人的;
- (三) 有未了结的民事案件, 人民法院决定不准出境的;
- (四) 因妨害国(边)境管理受到刑事处罚或者因非法出境, 非法居留, 非法就业被其他国家或者地区遣返, 未满不准出境规定年限的;
- (五) 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 国务院有关主管部门决定不准出境的;
- (六) 法律, 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的其他情形.

第十三条 定居国外的中国公民要求回国定居的, 应当在入境前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 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提出申请, 也可以由本人或者经由国内亲属向拟定居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侨务部门提出申请.

第十四条 定居国外的中国公民在中国境内办理金融, 教育, 医疗, 交通, 电信, 社会保险, 财产登记等事务需要提供身份证明的, 可以凭本人的护照证明其身份.

第三章 外国人入境出境

第一节 签证

第十五条 外国人入境, 应当向驻外签证机关申请办理签证, 但是本法另有规定的除外.

第十六条 签证分为外交签证, 礼遇签证, 公务签证, 普通签证.

对因外交, 公务事由入境的外国人, 签发外交, 公务签证; 对因身份特殊需要给予礼遇的外国人, 签发礼遇签证. 外交签证, 礼遇签证, 公务签证的签发范围和签发办法由外交部规定.

对因工作, 学习, 探亲, 旅游, 商务活动, 人才引进等非外交, 公务事由入境的外国人, 签发相应类别的普通签证. 普通签证的类别和签发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七条 签证的登记项目包括: 签证种类, 持有人姓名, 性别, 出生日期, 入境次数, 入境有效期, 停留期限, 签发日期, 地点, 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号码等.

第十八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 应当向驻外签证机关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 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 按照驻外签证机关的要求办理相关手续, 接受面谈.

第十九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需要提供中国境内的单位或者个人出具的邀请函件的, 申请人应当按照驻外签证机关的要求提供. 出具邀请函件的单位或者个人应当对邀请内容的真实性负责.

第二十条 出于人道原因需要紧急入境, 应邀入境从事紧急商务, 工程抢修或者具有其他紧急入境需要并持有有关主管部门同意在口岸申办签证的证明材料的外国人, 可以在国务院批准办理口岸签证业务的口岸, 向公安部委托的口岸签证机关(以下简称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口岸签证.

旅行社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入境旅游的, 可以向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团体旅游签证.

外国人向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签证, 应当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 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 按照口岸签证机关的要求办理相关手续, 并从申请签证的口岸入境.

口岸签证机关签发的签证一次入境有效, 签证注明的停留期限不得超过三十日.

第二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 不予签发签证:

- (一) 被处驱逐出境或者被决定遣送出境, 未满不准入境规定年限的;
- (二) 患有严重精神障碍, 传染性肺结核病或者有可能对公共卫生造成重大危害的其他传染病的;
- (三) 可能危害中国国家安全和利益, 破坏社会公共秩序或者从事其他违法犯罪活动的;

(四) 在申请签证过程中弄虚作假或者不能保障在中国境内期间所需费用的；

(五) 不能提交签证机关要求提交的相关材料的；

(六) 签证机关认为不宜签发签证的其他情形。

对不予签发签证的，签证机关可以不说明理由。

第二十二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免办签证：

(一) 根据中国政府与其他国家政府签订的互免签证协议，属于免办签证人员的；

(二) 持有效的外国人居留证件的；

(三) 持联程客票搭乘国际航行的航空器，船舶，列车从中国过境前往第三国或者地区，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二十四小时且不离开口岸，或者在国务院批准的特定区域内停留不超过规定时限的；

(四) 国务院规定的可以免办签证的其他情形。

第二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人需要临时入境的，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

(一) 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登陆港口所在城市的；

(二) 本法第二十二条第三项规定的人员需要离开口岸的；

(三) 因不可抗力或者其他紧急原因需要临时入境的。

临时入境的期限不得超过十五日。

对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要求外国人本人，载运其入境的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提供必要的保证措施。

第二节 入境出境

第二十四条 外国人入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签证或者其他入境许可证明，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入境。

第二十五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入境：

- (一) 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或者拒绝，逃避接受边防检查的；
- (二) 具有本法第二十一条第一款第一项至第四项规定情形的；
- (三) 入境后可能从事与签证种类不符的活动的；
- (四) 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入境的其他情形。

对不准入境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不说明理由。

第二十六条 对未被准许入境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责令其返回；对拒不返回的，强制其返回。外国人等待返回期间，不得离开限定的区域。

第二十七条 外国人出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等出境入境证件，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出境。

第二十八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

- (一) 被判处刑罚尚未执行完毕或者属于刑事案件被告人，犯罪嫌疑人的，但是按照中国与外国签订的有关协议，移管被判刑人的除外；
- (二) 有未了结的民事案件，人民法院决定不准出境的；
- (三) 拖欠劳动者的劳动报酬，经国务院有关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不准出境的；
- (四) 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的其他情形。

第四章 外国人停留居留

第一节 停留居留

第二十九条 外国人所持签证注明的停留期限不超过一百八十日的, 持证人凭签证并按照签证注明的停留期限在中国境内停留。

需要延长签证停留期限的, 应当在签证注明的停留期限届满七日前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 按照要求提交申请事由的相关材料。经审查, 延期理由合理、充分的, 准予延长停留期限; 不予延长停留期限的, 应当按期离境。延长签证停留期限, 累计不得超过签证原注明的停留期限。

第三十条 外国人所持签证注明入境后需要办理居留证件的, 应当自入境之日起三十日内, 向拟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

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 应当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 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 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十五日内进行审查并作出审查决定, 根据居留事由签发相应类别和期限的外国人居留证件。

外国人工作类居留证件的有效期最短为九十日, 最长为五年; 非工作类居留证件的有效期最短为一百八十日, 最长为五年。

第三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 不予签发外国人居留证件:

- (一) 所持签证类别属于不应办理外国人居留证件的;
- (二) 在申请过程中弄虚作假的;
- (三) 不能按照规定提供相关证明材料的;
- (四) 违反中国有关法律, 行政法规, 不适合在中国境内居留的;
- (五) 签发机关认为不宜签发外国人居留证件的其他情形。

符合国家规定的专门人才, 投资者或者出于人道等原因确需由停留变更为居留的外国人, 经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批准可以办理外国人居留证件.

第三十二条 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申请延长居留期限的, 应当在居留证件有效期限届满三十日前向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请, 按照要求提交申请事由的相关材料. 经审查, 延期理由合理, 充分的, 准予延长居留期限; 不予延长居留期限的, 应当按期离境.

第三十三条 外国人居留证件的登记项目包括: 持有人姓名, 性别, 出生日期, 居留事由, 居留期限, 签发日期, 地点, 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号码等.

外国人居留证件登记事项发生变更的, 持证件人应当自登记事项发生变更之日起十日内向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变更.

第三十四条 免办签证入境的外国人需要超过免签期限在中国境内停留的, 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在中国境内停留需要离开港口所在城市, 或者具有需要办理外国人停留证件其他情形的, 应当按照规定办理外国人停留证件.

外国人停留证件的有效期最长为一百八十日.

第三十五条 外国人入境后, 所持的普通签证, 停留居留证件损毁, 遗失, 被盗抢或者有符合国家规定的事由需要换发, 补发的, 应当按照规定向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请.

第三十六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不予办理普通签证延期, 换发, 补发, 不予办理外国人停留居留证件, 不予延长居留期限的决定为最终决定.

第三十七条 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 不得从事与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动, 并应当在规定的停留居留期限届满前离境.

第三十八条 年满十六周岁的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 应当随身携带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 或者外国人停留居留证件, 接受公安机关的查验.

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 应当在规定的时间内到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交验外国人居留证件.

第三十九条 外国人在中国境内旅馆住宿的, 旅馆应当按照旅馆业治安管理的有关规定为其办理住宿登记, 并向所在地公安机关报送外国人住宿登记信息.

外国人在旅馆以外的其他住所居住或者住宿的, 应当在入住后二十四小时内由本人或者留宿人, 向居住地的公安机关办理登记.

第四十条 在中国境内出生的外国婴儿, 其父母或者代理人应当在婴儿出生六十日内, 持该婴儿的出生证明到父母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为其办理停留或者居留登记.

外国人在中国境内死亡的, 其家属, 监护人或者代理人, 应当按照规定, 持该外国人的死亡证明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报, 注销外国人停留居留证件.

第四十一条 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 应当按照规定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 任何单位和个人不得聘用未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的外国人.

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四十二条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主管部门, 外国专家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经济社会发展需要和人力资源供求状况制定并定期调整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指导目录.

国务院教育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国留学生勤工助学管理制度, 对外国留学生勤工助学的岗位范围和时限作出规定.

第四十三条 外国人有下列行为之一的, 属于非法就业:

- (一) 未按照规定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在中国境内工作的;
- (二) 超出工作许可限定范围在中国境内工作的;
- (三) 外国留学生违反勤工助学管理规定, 超出规定的岗位范围或者时限在中国境内

工作的.

第四十四条 根据维护国家安全, 公共安全的需要, 公安机关, 国家安全机关可以限制外国人, 外国机构在某些地区设立居住或者办公场所; 对已经设立的, 可以限期迁离. 未经批准, 外国人不得进入限制外国人进入的区域.

第四十五条 聘用外国人工作或者招收外国留学生的单位, 应当按照规定向所在地公安机关报告有关信息.

公民, 法人或者其他组织发现外国人有非法入境, 非法居留, 非法就业情形的, 应当及时向所在地公安机关报告.

第四十六条 申请难民地位的外国人, 在难民地位甄别期间, 可以凭公安机关签发的临时身份证明在中国境内停留; 被认定为难民的外国人, 可以凭公安机关签发的难民身份证件在中国境内停留居留.

第二节 永久居留

第四十七条 对中国经济社会发展作出突出贡献或者其他在中国境内永久居留条件的外国人, 经本人申请和公安部批准, 取得永久居留资格.

外国人在中国境内永久居留的审批管理办法由公安部, 外交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第四十八条 取得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 凭永久居留证件在中国境内居留和工作, 凭本人的护照和永久居留证件出境入境.

第四十九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 由公安部决定取消其在中国境内永久居留资格:

- (一) 对中国国家安全和利益造成危害的;
- (二) 被处驱逐出境的;
- (三) 弄虚作假骗取在中国境内永久居留资格的;

(四) 在中国境内居留未达到规定时限的；

(五) 不适宜在中国境内永久居留的其他情形。

第五章 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边防检查

第五十条 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离开，抵达口岸时，应当接受边防检查。对交通运输工具的入境边防检查，在其最先抵达的口岸进行；对交通运输工具的出境边防检查，在其最后离开的口岸进行。特殊情况下，可以在有关主管机关指定的地点进行。

出境的交通运输工具自出境检查后至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自入境后至入境检查前，未经出入境边防检查机关按照规定程序许可，不得上下人员，装卸货物或者物品。

第五十一条 交通运输工具负责人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应当按照规定提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报告入境，出境的交通运输工具抵达，离开口岸的时间和停留地点，如实申报员工，旅客，货物或者物品等信息。

第五十二条 交通运输工具负责人，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应当配合出境入境边防检查，发现违反本法规定行为的，应当立即报告并协助调查处理。

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入境人员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应当负责载离。

第五十三条 出入境边防检查机关按照规定对处于下列情形之一的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进行监护：

- (一) 出境的交通运输工具在出境边防检查开始后至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在入境后至入境边防检查完成前；
- (二) 外国船舶在中国内河航行期间；
- (三) 有必要进行监护的其他情形。

第五十四条 因装卸物品，维修作业，参观访问等事由需要上下外国船舶的人员，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登轮证件。

中国船舶与外国船舶或者外国船舶之间需要搭靠作业的, 应当由船长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船舶搭靠手续.

第五十五条 外国船舶, 航空器在中国境内应当按照规定的路线, 航线行驶.

出境入境的船舶, 航空器不得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 因不可预见的紧急情况或者不可抗力驶入的, 应当立即向就近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或者当地公安机关报告, 并接受监护和管理.

第五十六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 不准出境入境; 已经驶离口岸的, 可以责令返回:

- (一) 离开, 抵达口岸时, 未经查验准许擅自出境入境的;
- (二) 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
- (三) 涉嫌载有不准出境入境人员, 需要查验核实的;
- (四) 涉嫌载有危害国家安全, 利益和社会公共秩序的物品, 需要查验核实的;
- (五) 拒绝接受出入境边防检查机关管理的其他情形.

前款所列情形消失后, 出入境边防检查机关对有关交通运输工具应当立即放行.

第五十七条 从事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的单位, 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备案. 从事业务代理的人员, 由所在单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办理备案手续.

第六章 调查和遣返

第五十八条 本章规定的当场盘问, 继续盘问, 拘留审查, 限制活动范围, 遣送出境措施, 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实施.

第五十九条 对涉嫌违反出境入境管理的人员, 可以当场盘问; 经当场盘问, 有下列情形之一的, 可以依法继续盘问:

- (一) 有非法出境入境嫌疑的；
 - (二) 有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嫌疑的；
 - (三) 外国人有非法居留，非法就业嫌疑的；
 - (四) 有危害国家安全和利益，破坏社会公共秩序或者从事其他违法犯罪活动嫌疑的。
- 当场盘问和继续盘问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规定的程序进行。
-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需要传唤涉嫌违反出境入境管理的人员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执行。

第六十条 外国人有本法第五十九条第一款规定情形之一的，经当场盘问或者继续盘问后仍不能排除嫌疑，需要作进一步调查的，可以拘留审查。

实施拘留审查，应当出示拘留审查决定书，并在二十四小时内进行询问。发现不应当拘留审查的，应当立即解除拘留审查。

拘留审查的期限不得超过三十日；案情复杂的，经上一级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批准可以延长至六十日。对国籍，身份不明的外国人，拘留审查期限自查清其国籍，身份之日起计算。

第六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适用拘留审查，可以限制其活动范围：

- (一) 患有严重疾病的；
- (二) 怀孕或者哺乳自己不满一周岁婴儿的；
- (三) 未满十六周岁或者已满七十周岁的；
- (四) 不宜适用拘留审查的其他情形。

被限制活动范围的外国人，应当按照要求接受审查，未经公安机关批准，不得离开限定的区域。限制活动范围的期限不得超过六十日。对国籍，身份不明的外国人，限制活动范围期限自查清其国籍，身份之日起计算。

第六十二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遣送出境：

- (一) 被处限期出境，未在规定期限内离境的；
- (二) 有不准入境情形的；
- (三) 非法居留，非法就业的；
- (四) 违反本法或者其他法律，行政法规需要遣送出境的。

其他境外人员有前款所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遣送出境。

被遣送出境的人员，自被遣送出境之日起一至五年内不准入境。

第六十三条 被拘留审查或者被决定遣送出境但不能立即执行的人员，应当羁押在拘留所或者遣返场所。

第六十四条 外国人对依照本法规定对其实施的继续盘问，拘留审查，限制活动范围，遣送出境措施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该行政复议决定为最终决定。

其他境外人员对依照本法规定对其实施的遣送出境措施不服，申请行政复议的，适用前款规定。

第六十五条 对依法决定不准出境或者不准入境的人员，决定机关应当按照规定及时通知出入境边防检查机关；不准出境，入境情形消失的，决定机关应当及时撤销不准出境，入境决定，并通知出入境边防检查机关。

第六十六条 根据维护国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必要时，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的人员进行人身检查。人身检查应当由两名与受检查人同性别的边防检查人员进行。

第六十七条 签证，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发生损毁，遗失，被盗抢或者签发后发现持证人不符合签发条件等情形的，由签发机关宣布该出境入境证件作废。

伪造，变造，骗取或者被证件签发机关宣布作废的出境入境证件无效。

公安机关可以对前款规定的或被他人冒用的出境入境证件予以注销或者收缴。

第六十八条 对用于组织, 运送, 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 以及需要作为办案证据的物品, 公安机关可以扣押.

对查获的违禁物品, 涉及国家秘密的文件, 资料以及用于实施违反出境入境管理活动的工具等, 公安机关应当予以扣押, 并依照相关法律, 行政法规规定处理.

第六十九条 出境入境证件的真伪由签发机关, 出入境边防检查机关或者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认定.

第七章 法律责任

第七十条 本章规定的行政处罚, 除本章另有规定外, 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决定; 其中警告或者五千元以下罚款, 可以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决定.

第七十一条 有下列行为之一的, 处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情节严重的, 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 可以并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

- (一) 持用伪造, 变造, 骗取的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的;
- (二) 冒用他人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的;
- (三) 逃避出境入境边防检查的;
- (四) 以其他方式非法出境入境的.

第七十二条 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 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 情节严重的, 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有违法所得的, 没收违法所得.

单位有前款行为的, 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有违法所得的, 没收违法所得,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三条 弄虚作假骗取签证, 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的, 处二千元以上五千

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四条 违反本法规定，为外国人出具邀请函件或者其他申请材料的，处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责令其承担所邀请外国人的出境费用。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责令其承担所邀请外国人的出境费用，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五条 中国公民出境后非法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被遣返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收缴其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证件签发机关自其被遣返之日起六个月至三年以内不予签发出境入境证件。

第七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可以并处二千元以下罚款：

- (一) 外国人拒不接受公安机关查验其出境入境证件的；
- (二) 外国人拒不交验居留证件的；
- (三) 未按照规定办理外国人出生登记，死亡申报的；
- (四) 外国人居留证件登记事项发生变更，未按照规定办理变更的；
- (五) 在中国境内的外国人冒用他人出境入境证件的；
- (六) 未按照本法第三十九条第二款规定办理登记的。

旅馆未按照规定办理外国人住宿登记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未按照规定向公安机关报送外国人住宿登记信息的，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第七十七条 外国人未经批准,擅自进入限制外国人进入的区域,责令立即离开;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对外国人非法获取的文字记录,音像资料,电子数据和其他物品,予以收缴或者销毁,所用工具予以收缴。

外国人,外国机构违反本法规定,拒不执行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限期迁离决定的,给予警告并强制迁离;情节严重的,对有关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七十八条 外国人非法居留的,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每非法居留一日五百元,总额不超过一万元的罚款或者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因监护人或者其他负有监护责任的人未尽到监护义务,致使未满十六周岁的外国人非法居留的,对监护人或者其他负有监护责任的人给予警告,可以并处一千元以下罚款。

第七十九条 容留,藏匿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国人,协助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国人逃避检查,或者为非法居留的外国人违法提供出境入境证件的,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八十条 外国人非法就业的,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介绍外国人非法就业的,对个人处每非法介绍一人五千元,总额不超过五万元的罚款;对单位处每非法介绍一人五千元,总额不超过十万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非法聘用外国人的,处每非法聘用一人一万元,总额不超过十万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八十一条 外国人从事与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动,或者有其他违反中国法律,法规规定,不适宜在中国境内继续停留居留情形的,可以处限期出境。

外国人违反本法规定, 情节严重, 尚不构成犯罪的, 公安部可以处驱逐出境。公安部的处罚决定为最终决定。

被驱逐出境的外国人, 自被驱逐出境之日起十年内不准入境。

第八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 给予警告, 可以并处二千元以下罚款:

- (一) 扰乱口岸限定区域管理秩序的;
- (二) 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未办理临时入境手续登陆的;
- (三) 未办理登轮证件上下外国船舶的。

违反前款第一项规定, 情节严重的, 可以并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

第八十三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 对其负责人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 (一) 未经查验准许擅自出境入境或者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
- (二) 未按照规定如实申报员工, 旅客, 货物或者物品等信息, 或者拒绝协助出境入境边防检查的;
- (三) 违反出境入境边防检查规定上下人员, 装卸货物或者物品的。

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出境入境人员出境入境的, 处每载运一人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交通运输工具负责人证明其已经采取合理预防措施的, 可以减轻或者免于处罚。

第八十四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 对其负责人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 (一) 中国或者外国船舶未经批准擅自搭靠外国船舶的;
- (二) 外国船舶, 航空器在中国境内未按照规定的路线, 航线行驶的;
- (三) 出境入境的船舶, 航空器违反规定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的。

第八十五条 履行出境入境管理职责的工作人员, 有下列行为之一的, 依法给予处分:

- (一) 违反法律, 行政法规, 为不符合规定条件的外国人签发签证, 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的;
- (二) 违反法律, 行政法规, 审核验放不符合规定条件的人员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的;
- (三) 泄露在出境入境管理工作中知悉的个人信息, 侵害当事人合法权益的;
- (四) 不按照规定将依法收取的费用, 收缴的罚款及没收的违法所得, 非法财物上缴国库的;
- (五) 私分, 侵占, 挪用罚没, 扣押的款物或者收取的费用的;
- (六) 滥用职权, 玩忽职守, 徇私舞弊, 不依法履行法定职责的其他行为.

第八十六条 对违反出境入境管理行为处五百元以下罚款的, 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当场作出处罚决定.

第八十七条 对违反出境入境管理行为处罚款的, 被处罚人应当自收到处罚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 到指定的银行缴纳罚款. 被处罚人在所在地没有固定住所, 不当场收缴罚款事后难以执行或者在口岸向指定银行缴纳罚款确有困难的, 可以当场收缴.

第八十八条 违反本法规定, 构成犯罪的, 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八十九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出境, 是指由中国内地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 由中国内地前往香港特别行政区, 澳门特别行政区, 由中国大陆前往台湾地区.

入境, 是指由其他国家或者地区进入中国内地, 由香港特别行政区, 澳门特别行政区进入中国内地, 由台湾地区进入中国大陆.

外国人, 是指不具有中国国籍的人.

第九十条 经国务院批准, 同毗邻国家接壤的省, 自治区可以根据中国与有关国家签订的边界管理协定制定地方性法规, 地方政府规章, 对两国边境接壤地区的居民往来作出规定.

第九十一条 外国驻中国的外交代表机构, 领事机构成员以及享有特权和豁免的其他外国人, 其入境出境及停留居留管理, 其他法律另有规定的, 依照其规定.

第九十二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 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或者申请办理证件延期, 变更的, 应当按照规定缴纳签证费, 证件费.

第九十三条 本法自 2013年 7月 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同时废止.

연구총서 12-AB-09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발 행 / 2012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 / 5283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992-9 93360